





# 차례

## 주제발표

주제 1: 보육교사 자격제도 개선 방안 ..... 1

김은설(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주제 2: 보육시설장 자격제도 개선 방안 및 보육교사교육원 평가 방향 · 19

김의향(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장)

## 토론

김명순(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 43

백선희(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49

이미정(여주대학 보육과 교수) ..... 53

지성애(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 59

강무섭(한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부회장) ..... 63

김용희(한국보육시설연합회 국공립보육시설분과위원장) ..... 69

원준호(예님어린이집 원아부모) ..... 75

이혜수(인왕어린이집 보육교사) ..... 79

---



주제발표 1

---

## 보육교사 자격제도 개선 방안

김 은 설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보육교사 자격제도 개선 방안<sup>1)</sup>

김은설(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1. 서론

#### □ “아이를 맡길 만한 보육시설”: 보육시설 질의 문제

-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래 우리 정부는 꾸준히 보육료 지원을 늘이고 보다 많은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보육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시행해오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맡길 만한 곳이 없다”라는 불만의 소리가 있으며 이는 수적으로 시설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자녀를 제대로 돌보고 가르쳐줄 만하다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신뢰로운 보육시설을 찾기 힘들다는 뜻임.
- 실태조사(서문희 외, 2009)에 의하면, 취업모 중 20%이상이 보낼만한 곳이 없다고 응답함. 즉, 이제 보육의 양적 성장뿐 아니라 질적인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시점임.

#### □ 보육의 질과 보육교사의 전문성

- 보육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보육교사의 능력과 자질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음. 현재의 12과목 35학점 취득을 통한 전공 무관 교사 양성체계나 고졸이상 자격부여 제도는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해준다고 보기 어려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 기존 보육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많은 연구들을 보면, 김정신 등(2006)은 보육교사의 자격제도 강화를 위해 국가고시제를 도입하고 보육교사 단기양성제도를 폐지할 것을 주장하였고 박덕승(2005)은 보육실습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유희정 등(2007)은 보육교사의 호봉체계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그 외에도 학과제로의 복귀, 이수학점 상향조정 등 양성과정 관련 연구(이연승 외, 2005; 이미화 외 2006; 지성애 외 2006), 학력별 자격등급 차별화, 3급자격 역할구분 (표갑수 외, 1998; 서영숙 외, 2005; 이미화 외, 2004; 김정신, 2007) 등 자격관련 연구와 이를 통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들이 있었음.
- 본 연구는, 보육전문가와 관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할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각각에 대한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1) 본 발제문은 보고서 ‘김은설 외(2009). 「보육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를 토대로 하여 일부 내용을 취합, 재정리한 것임.

## 2. 보육교사의 전문성

### 가. 왜 ‘보육교사’인가?

□ ‘보육사’에서 ‘보육교사’로

- ‘보육교사’라는 명칭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이전의 ‘보육사’라는 자격이 ‘보육교사’로 변경되면서 생겨남. 이전까지 ‘보육사’라고 하던 직업을 ‘보육교사’라고 법적으로 규정하였다는 것은 그 자격이나 신분에 있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직업으로 변화되었다는 의미를 함유함.
  - 우리나라에서 “교사”라는 이름이 붙는 직업은 유치원, 초·중등학교 교사 이외에는 없음. 법으로써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사”라고 지칭하였을 때에는 기존의 학교 교사에 가깝다는 의식을 가지고, 어린 영유아들을 기르고([보육]) 가르치는 자([교사])라는 전문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인정한 것임. ‘교사’는 교사라는 직업에 어울리는 직업적 책임과 사회적 대우와 인정이 필요하며 이 직업을 갖기 위해 일정 수준의 교육과 엄중한 자격기준이 요구됨을 명료화한 것임.
  - 교사는 누구나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며 사회적으로 승인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그 자질과 능력을 자격증으로써 대표해 보여줄 수 있는 전문적인 직업임. 그러나 보육교사는 대학교 전공 과정을 밟지 않아도 누구나 아이를 ‘돌보면’ 된다는 의식이 있음. 그러므로 보육교사가 전문성을 확보하려면 차별적인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 지식은 대학 교육을 통해 얻어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나. 보육교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은 무엇인가?

□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

- 보육교사는 연령과 발달단계별로 성장하는 아동의 발달 특성에 대해 전문 지식(core knowledge)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구체적으로 다양한 영유아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보육해야하는 지에 관한 구체화된 기술을 습득해야 함(Katz, 1996). 요구되는 전문지식은 다음과 같음.
  - 영유아의 학습방법
  - 영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자극과 경험의 정도
  - 영유아의 생활습관 및 언어 습득에 관한 지식
  - 보육프로그램의 계획 및 보육활동 수행 등 보육과정과 교수에 관한 지식

□ 영유아를 보살필 수 있는 기본 소양과 신념, 태도

-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잘 돌보고 보살필 수 있는 기본 소양과 신념, 태도 (core competencies of belief, attitude, personality)를 가지고 있어야 함(황윤세, 2007; Sternberg & Grigorenko, 1997).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 영유아의 개별적인 특성, 흥미, 요구와 질문을 이해하고 격려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
- 영유아와 오랜 시간 생활하므로 신체적인 건강과 활력, 심리적 건강, 정서적 안정성, 높은 자기조절능력, 밝고 긍정적인 사고.
- 직업에 대한 전문적 신념은 모든 의사결정과 교수행동에 기초가 됨.

지식활용 극대화를 위한 직무능력

- 다양한 현장 경험과 업무 경력(career and experience)의 축적과 통합을 통해, 보육교사는 교육의 실제 적용가능성, 즉 직무능력을 높여야 함. 습득한 이론적 지식을 현장에 적용하고 응용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함.

의사소통의 기술

- 보육교사는 학부모와 어린 영유아와의 의사소통은 물론, 시설장과 동료교사, 기타 보육인력, 나아가 유관 지역사회 관련자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보육의 효과를 높이고 시설의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함.

## 다. 보육교사의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양성과정의 이수 교과목과 경력

- 보육교사의 정규 교육, 아동발달관련 전공과목 수강여부, 보육교사 경력이 교사의 업무수행 능력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음.
  - 연구에 따르면(현온강·태진, 2000; Honig & Hirallal, 1998), 아동 관련 교육을 많이 받을수록, 보육교사자격의 취득 경로에 따라, 그리고 보육경력이 4년 이상 될수록 아동의 언어 및 사회성 발달을 증진하는 교사역할을 더 잘 수행하고 체계적인 교수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보수교육

- 1년에 15시간 이상 전문연수를 받는 교사가 15시간 미만의 연수를 받은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욱 민감하고 친절한 보육행동을 보임(Whitebook, Howes, & Phillips, 1989),
  - 보육교사의 재교육과정이 아동의 사회성 발달(친사회성, 적응력, 자율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보육교사의 학력

- 교사의 아동과의 상호작용과 교수 방법의 실제가 보육의 질은 물론 아동의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이는 교사의 학력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보고됨(Berk, 1985). 즉 고졸 교사보다는 2년 이상의 대학교육을 받은 교사가 아동과 더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며 상호작용양식이 억압적이지 않고 아동 중심적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남.

□ 전문적 신념

- 전문성 요인의 하나인 교사의 전문적 신념은 교사의 모든 의사결정과 교수행동에 기초가 되며(Saracho & Spodek, 1993; Spodek, 1988)며, 전문성에 대한 교사들 스스로의 인식이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결정짓는 중요 요인이 됨(김승옥, 황윤세, 2006).

□ 근무여건

- 보육교사의 연령이 낮고 해당 아동의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보육교사의 육체적 노동의 강도와 부하가 심할수록 보육의 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즉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근무 가능 환경과 업무 시간 등 근무조건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

### 3. 보육교사 자격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가. 현황

- 보육교사 자격 제도는 1, 2, 3급의 자격급수를 두고 있으며 각 자격의 취득요건은 다음 <표 1>에 제시된 것과 같음.
- 이전의 자격기준과 비교할 때 보육교사 1급의 기준이 엄격해져 2급 자격 취득 후 3년이라는 경력을 요구하고 있고 대학원 석사학위를 2년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 200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전과 비교할 때, 이전에는 전문대포함 대학졸업자들은 1급 자격부여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2급으로 낮추어졌고 3급을 취득한 경우에는 1년의 경력이 있으면 2급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표 1> 현행 보육교사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가.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나.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2급	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나.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보육교사자격증 교부는 현재 (재)한국보육진흥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2, 3급 자격증발급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추세임(표 2 참조).

- 특히 신규 자격증 취득자라고 볼 수 있는 보육교사 2급 자격자와 3급 자격자의 수를 보면 2009년의 경우, 이전 해(2008년)에 3급을 받아 승급했을 가능성이 있는 11,558명을 제외하면 2급 신규 자격취득자는 47,518명 가량임. 3급 신규 자격취득자는 12,029명임. 즉, 총 신규 자격취득자의 20% 가량이 3급 보육교사자격자임.

<표 2>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현황

(단위: 건)

구 분	1급	2급	3급	계
2005	44,302	15,742	309	60,353
2006	76,809	11,562	10,910	99,281
2007	64,607	35,222	10,755	110,584
2008	51,359	47,087	11,558	110,004
2009	30,527	59,076	12,029	101,632
총 계	267,604	168,689	45,561	481,854

자료출처: 한국보육진흥원

## 나. 자격 및 양성 관련 문제점

- 기존 연구의 결과를 검토하고 관련자와의 면접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보육교사 양성 및 자격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됨. 기타 영역의 보육교사 관련 문제점은 제외하고 자격 부분에만 초점을 맞춤.

### □ 보육교사 3급의 전문성

- 현 자격제도에서 3급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1년 단기 교육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임. 그러나 3급 보육교사 자격자들의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있음.
- 2급 자격인 12과목 35학점 조건에 비해 더욱 많은 과목(25과목)과 학점(60학점)을 이수함에도 2~4년에 걸친 교육의 과정을 지나온 보육교사들이 보여주는 순간 판단력, 상황 대처력, 아동과의 상호작용, 이해력, 새로운 기술의 수용과 적응력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차이는 대학에서 경험하게 되는 교양과목과 수업의 질 등에 기인한 것일 수 있음.

“교사를 채용할 때 아무래도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지원자의 학력이죠. 고졸보다는 대졸을 뽑고 싶어요. 고졸자가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하고 보육교사가 되는 경우 실제로 부족한 게 많아요. 이것저것 설명해 주어도 금방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졸이거나 40대 이상 나이가 많은 경우는 사실 좀 힘들어요.... 하지만 보육교사 교육원 출신자이더라도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1년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일을 잘하고 괜찮다고 생각해요. (보육시설장 간담회, 2009. 10.)”

## □ 자격승급의 용이함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너무 쉽게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유사 직종의 승급 방식과 비교해도 보육교사 1급 승급이 용이함을 보임.
  - 사회복지사가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국가고시를 통과할 것을 요구함.
  - 유치원교사의 경우는 보육교사 3급과 유사한 ‘준교사’ 자격과 비교해 볼 때 준교사는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재교육을 받은 후에 2급 정교사가 됨. 2급 정교사는 3년의 교직 경력 후 1급으로 승급됨.

## □ 양성과정 필수 학점수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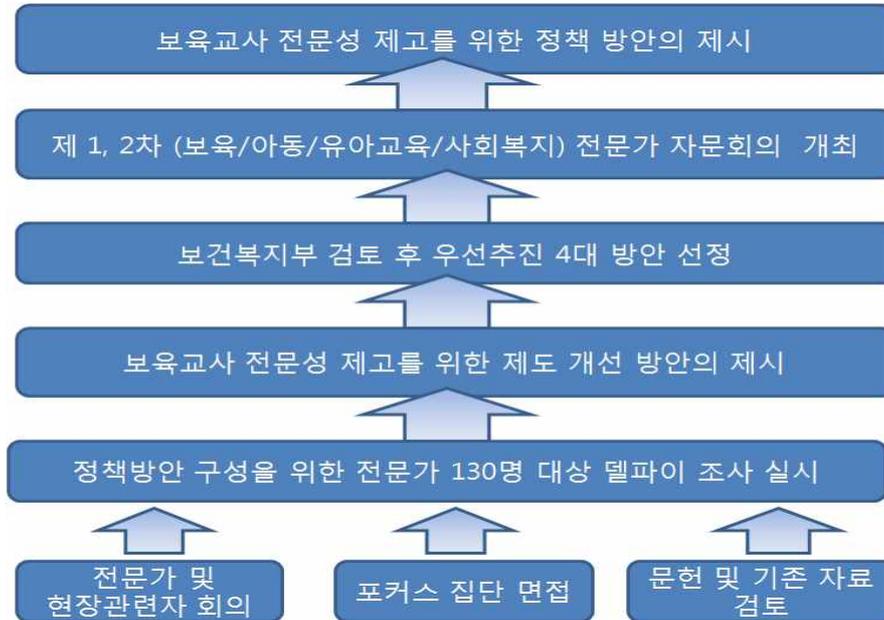
- 보육과 무관한 학과에서 교과목 이수만으로 보육교사가 배출된다는 것은 양성교육과정이 보육교사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대학(교)에서의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 이수 기준은 보육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이론과 실재를 익히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임.
  - 유치원교사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양성교육과정을 비교해보면, 유치원교사의 경우 유아교육과에서 전공(50학점)과 교직과목(22학점)으로 총 72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사회복지사의 경우 전공 14과목 42학점을 이수해야 함.
  - 유치원교사의 경우 자격 취득을 위한 전공, 교직관련 이수과목 및 이수학점을 확대하였고, 졸업성적 기준 평균 75점 미달 시 교사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2008년 입학생부터 적용되고 있음.

〈표3〉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사회복지사 양성 교육과정 비교

구분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사회복지사
양성기관	보육교사교육원(1년제-고졸 이상 학력),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방송통신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훈련기관(24주 이상- 고졸이상의 학력요구),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
이수학점	전공 12과목 35학점 (교직과목과 관련 요구 사항이 없음)	전공과목 50학점, 교직과목 22학점 (교직과목 이수필수)	대학: 전공 14과목 42학점 대학원: 전공 8과목 24학점
자격인정	관련 교과목 학점 이수와 단기양성기관 수료로 자격증 발급	학과제를 기본으로 자격부여	교과목 이수와 교육훈련시설에서의 교육, 국가시험 등 급수별로 상이

출처: 영유아보육법(2009), 유아교육법(2009), 사회복지사업법(2009)

#### 4. 연구의 절차



#### 5. 조사결과의 분석

- 본 연구의 논의와 기존 연구 결과들을 수렴하여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제안하고 각각의 필요성과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이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델파이조사를 실시함.

##### 가. 델파이 조사의 개요

- 조사대상 : 보육 분야 관련 전공 대학 교수 및 보육교사교육원 교수 총 130명  
최종 2차 조사까지 참여자는 75명

〈표 4〉 델파이 조사 참여자 수

단위: 명

	1차 델파이 조사	2차 델파이 조사
대학(전문대 포함) 교수	51	46
보육교사 교육원 교수	41	29
계	92	75

- 조사 기간: 2009년 11월
- 조사 방법: 이메일을 통한 송수신, 제1, 2차 조사 실시
- 조사 내용: 총 29개 문항. 다음 4개 영역 각 사안에 대해 필요성과 현실화 가능성을 조사함. ①보육교사 양성제도 개선 방안 ②보육교사 자격취득 제도 개선 방안 ③보육시설장 자격취득 제도 개선 방안 ④보육교사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 (※본 원고에서는 ①번과 ②번 내용에 관련한 결과만 제시하고 있음).

## 나. 델파이 조사의 결과

### □ 승급시 요구 경력의 연장

- 3급에서 2급, 그리고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하는 데 필요한 경력을 늘여야 한 다는 안에 대해 필요함 50.7%, 불필요 21.4%로 응답함. 44%가 현실적으로 시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표 5〉 보육교사 자격 승급시 요구되는 경력(연한) 연장

단위: %, 점

필요성	매우필요	조금필요	보통	별로불필요	전혀불필요	평균(표준편차)
	18.7	32.0	28.0	14.7	6.7	3.41(1.15)
현실화가능성	매우높음	조금높음	보통	별로없음	전혀없음	평균(표준편차)
	8.0	36.0	34.7	17.3	4.0	3.27(0.98)

주: 평균은 전혀 불필요(전혀없음) 1점, 매우필요(매우높음) 5점으로 점수화한 결과임.

### □ 전공학과제로의 전환

- 2급 보육교사 자격의 학과제 전환에 대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는 긍정응답의 비율이 1, 2차 조사에서 82.4%, 88.0%로 높게 나타난 반면, 현실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지적되었음. 결국 현행의 학점요구제를 학과제로 변경하는 것이 전문성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는 많은 비율로 동의하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음.

〈표 6〉 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 학과제로 전환

단위: %, 점

필요성	매우필요	조금필요	보통	별로불필요	전혀불필요	평균(표준편차)
	80.0	8.0	6.7	4.0	1.3	4.61(0.88)
현실화가능성	매우높음	조금높음	보통	별로없음	전혀없음	평균(표준편차)
	12.2	51.4	29.7	5.4	1.4	3.68(0.81)

주: 평균은 전혀 불필요(전혀없음) 1점, 매우필요(매우높음) 5점으로 점수화한 결과임.

## □ 필수 요구 학점수의 제고

- 현행 35학점제의 교과목 구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조사한 결과, 필요성 인식이 전반적으로 평균 4.3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필요하다는 긍정 응답율이 83.0%로 나타남.
- 현실화가능성도 다른 안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여 가능성이 있다는 긍정응답이 66.7%임.
-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은 현행의 교과목 요구 학점이 부족하고 이를 보다 많은 학점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강하며, 이의 현실화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즉, 자격 취득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학점은 우선적으로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7〉 2급 보육교사 양성과정의 요구 학점 상황조정

단위: %, 점

필요성	매우필요	조금필요	보통	별로불필요	전혀불필요	평균(표준편차)
	60.8	23.0	10.8	5.4	0.0	4.39(0.89)
현실화가능성	매우높음	조금높음	보통	별로없음	전혀없음	평균(표준편차)
	16.0	50.7	28.0	5.3	0.0	3.77(0.78)

주: 평균은 전혀 불필요(전혀없음) 1점, 매우필요(매우높음) 5점으로 점수화한 결과임.

## □ 교직원 관련 과목의 추가

- 교직원 관련 과목을 양성과정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 77.7%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전체적으로 4/5점 수준으로 나타남. 그러나 현실화가능성에 대해서는 49.3%만이 가능하다고 봄.
- 보육교사도 교직에 가깝다는 의견이 전문가 집단내에서 인식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교직을 추가하여 가르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봄.

〈표 8〉 보육교사 양성과정에 교직원 과목 추가

단위: %, 점

필요성	매우필요	조금필요	보통	별로불필요	전혀불필요	평균(표준편차)
	44.0	26.7	18.7	8.0	2.7	4.01(1.10)
현실화가능성	매우높음	조금높음	보통	별로없음	전혀없음	평균(표준편차)
	12.0	37.3	37.3	10.7	2.7	3.45(0.93)

주: 평균은 전혀 불필요(전혀없음) 1점, 매우필요(매우높음) 5점으로 점수화한 결과임.

□ 보육현장 실습교육의 강화

- 교육과정에서 실습을 강화하자는 안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필요하다’는 긍정응답이 77.4%로 높게 나타났고,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62.6%를 보였음.

〈표 9〉 보육교사 자격취득을 위한 실습교육 강화

단위: %, 점

필요성	매우필요	조금필요	보통	별로불필요	전혀불필요	평균(표준편차)
	42.7	34.7	14.7	8.0	0.0	4.12(0.94)
현실화가능성	매우높음	조금높음	보통	별로없음	전혀없음	평균(표준편차)
	13.3	49.3	33.3	4.0	0.0	3.72(0.75)

주: 평균은 전혀 불필요(전혀없음) 1점, 매우필요(매우높음) 5점으로 점수화한 결과임.

6. 결론: 개선방안

-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제도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sup>2)</sup>.

□ 보육교사 2급 양성교과목 조정 및 이수학점 사항<sup>3)</sup>:

현행 12과목 35학점 → 17과목 51학점

- 양성교과목 조정과 이수학점 사항의 <기본 방향>은 다음의 세 가지임.
  - 첫째, 보육교사의 교사로서의 인성과 자질의 함양
  - 둘째, 표준보육과정 각 영역에 대한 교육적 지도 역량의 제고
  - 셋째, 영아기에 대한 이해의 확장
- 보육교사로서의 인성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보육교사론」을 필수기초교과목으로 포함함.
  - 모든 예비보육교사는 일반적인 직장인이 아니라 영유아를 직접 돌보는 어머니이고 선생님인 특수한 직업임을 자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하며, 이를 통해 보육교사로서의 인성과 자질이 함양되기를 기대함.
  - 「보육교사론」에서는 일반 교사론뿐만 아니라 그 외 교직관련 학문, 보육교사의 고유성과 관련한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 보육교사로서의 책무를 배우게 함.
- 표준보육과정 각 영역에 대한 교육적 지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교과목 기준의 ‘영유아교육’ 영역을 강화하여, 선택가능 과목을 다양화하고, 현행 3과목 9학점 이상 선택에서 6과목 18학점 이상 선택으로 조정함.

2) 우선 추진을 목표로 하는 4가지 사안을 제시함.

3)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1, 2차에 걸친 자문회의의 논의내용이 반영된 결과임을 밝혀둠.

- 현재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 수·과학 지도'를 각각 떼어 「아동음악」, 「아동 동작」,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로 별도 과목화함.
- 「영유아사회정서지도」 과목을 추가함.
- 보육교사의 고유한 업무 중 하나인 영아보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영아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추구하는 방법으로서, 필수기초 교과목 영역의 기존 '영유아발달' 과목을 「영아발달」과 「유아발달」로 구분, 심화하여 공부하도록 함.
- 그 외, 발달 및 지도 영역에서 보육교사의 다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특수아동 이해」, 「장애아지도」를 추가함.
- 건강·안전 및 영양 영역에서 '안전' 관련 과목의 선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건강교육'과 '아동안전관리'로 나뉘어 있던 두 과목을 「아동건강 및 안전」으로 통합함.
- 보육실습 강화를 위해 2학점에서 3학점으로 학점을 상향조정함.

〈표 10〉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 현행 교과목과 개선안의 비교

현행 양성 교육 과정	영역 및 이수 과목		추진 방향 개선안
	현행	개선안	
아동복지(론), 보육학개론, 아동발달, 보육과정	보육기초(4과목) 4과목 12학점 필수	보육필수(6과목) 6과목 18학점 필수	보육학개론, 아동복지(론) <sup>4</sup> , <b>영아발달, 유아발달</b> , 보육과정, <b>보육교사론</b>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특수아동지도	발달 및 지도(5과목) 1과목 3학점 이상 선택	발달 및 지도(6과목) 1과목 3학점 이상 선택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아동생활지도, 아동상담(론), <b>특수아동 이해, 장애아지도</b>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아동음악과 동작, 아동미술, 아동수·과학지도,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영유아교육(8과목) 3과목 9학점 이상 선택	영유아교육(11과목) 6과목 18학점 이상 선택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문학, <b>아동음악, 아동동작</b> , 아동미술, <b>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b> ,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영유아교수방법(론), <b>영유아사회정서지도</b>
아동건강교육, 아동간호학, 아동안전관리,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건강·영양 및 안전(5과목) 2과목 6학점 이상 선택	건강·영양 및 안전(4과목) 2과목 6학점 이상 선택	<b>아동건강 및 안전</b> , 아동간호학, 아동영양학, 정신건강(론)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보육정책(론), 보육교사(론),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등(8과목) 1과목 3학점 이상 선택	가족 및 지역 사회 협력 등(6과목) 1과목 3학점 이상 선택	부모교육(론), 가족복지(론), 가족관계(론), 지역사회복지(론), 보육정책(론), 보육시설운영과 관리
보육실습	보육실습(1과목) 1과목 2학점 필수	보육실습(1과목) 1과목 3학점 필수	보육실습
<b>12과목(35학점) 이상</b>	<b>전 체</b>		<b>17과목(51학점) 이상</b>

- 결과적으로, 보육필수 영역은 6과목 18학점 이수로 늘어났고 영유아교육 영역 6과목 18학점 이상 선택, 보육실습 3학점으로 조정됨으로써, 총 이수학점은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됨.

#### □ 3급 보육교사 승급 필요경력 요건 강화

- 현재 자격 제도에서, 고졸학력 소지자인 3급 보육교사가 (가정)보육시설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까지는 최소 3년이면 충족이 됨. 2급 자격을 위한 필요 연수가 1년이라는 점이 짧다는 지적이 있으며 전문성 강화의 측면에서 이를 2년으로 연장하여 2급 승급에 대한 조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복지사의 경우 1급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국가고시를 통과할 것을 요구하고, 유치원교사의 경우 '준교사'자격은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재교육을 받은 후 2급 정교사가 될 수 있음.
  -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가 2급 보육교사 자격을 졸업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는 것과 비견할 때 1년 과정을 이수한 3급 보육교사가 1년 현장 경험을 더하여 2급으로 승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주장할 수 있으나, 보육교사가 경험하는 현장의 1년과 전문대학 보육전공자가 경험하는 학업의 1년을 동등한 것으로 취급할 수 없음.

※ 보육교사 2급 승급  
 - (현행) 보육교사 3급 + 1년 보육업무 + 승급교육  
 (변경안) 보육교사 3급 + 2년 보육업무 + 승급교육

#### □ 보육실습 기준 변경

- 기준 변경의 기본 방향은 첫째, 질적 수준이 보장된 시설에서의 실습만을 인정하고, 둘째, 보육시설에서 일을 할 보육교사로서 고유한 보육시설의 업무와 환경에 익숙할 수 있는 실습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춤.
- 평가인증 보육시설에서의 보육실습을 통한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실습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러므로 실습 기관을 평가인증보육시설로 제한함.
  - 종일반을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에서의 보육실습은 영아 및 종일제 보육과정 운영 경험 부재로 보육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이고 실천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4) 보육교사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현장 교수들은 '아동복지(론)'이 '보육학개론'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는 의견이 있음. 과목 내용 중복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함.

- ※ 실습기관
  - 15인 이상의 평가인증보육시설로 제한 (종일제 유치원 제외)
- ※ 실습기간
  - 실습기간은 4주 16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에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 □ 보육업무 경력 직종 제한

- 현행법에서 보육업무 경력 중 보육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은 직종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보육시설에서 취사부, 사무원, 운전사 등으로 승급요건을 충족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므로, 이럴 경우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부정적 영향이 있음.
- 보육업무 경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에서 보육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이나, 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전문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만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 보육업무 경력 인정 직종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에서 보육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정보센터장 또는 보육전문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 □ 기타 중장기 추진 검토사항

- **선임교사제의 신설: 국가 자격시험의 도입**
  - 우수 경력교사의 장기 근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선임교사제'를 도입하고 40인 이상 시설은 '선임교사'를 필수적으로 채용하도록 함.
  - 선임교사는 최소 경력이 5년이라고 볼 때 1급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보육교사로서 근무한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지만, '선임교사 국가자격시험'을 도입하여 통과한 경우 선임교사로서 직급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함.
- **자격급수에 따른 호봉의 차등 책정**
  - 교육기간에 있어 차이가 있는 보육교사 1급, 2급, 3급이 자격기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1호봉에서 시작한다는 점은 짧은 시간 투자하여 자격증을 취득, 쉽게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의 하나로 보육교사를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음.
  - 유치원교사의 자격과 호봉관계를 참고하여, 고졸 보육교사 3급 자격자는 현재의 초임 1호봉, 전문대졸 2급 자격자는 초임 3호봉, 그리고 4년제 대졸 2급 자격자는 초임 5호봉으로 각각 차등을 둘 수 있음.

## 참고문헌

- 김승옥·황윤세(2006). 유아교사(예비·현직)의 자기평가와 교사전문성 인식간의 관계. *아동교육*, 15(4), 117-126.
- 김은설·안재진·최윤경·김의향·양성은·김문정(2009). 보육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연구소
- 김정신·노은호(2006). 전문직으로서의 보육교사와 자격제도. *한국여성교양학회지*, 15, 207-234.
- 박덕승(2005).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한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 방안. *교육논문집*, 9, 297-323.
- 서영숙·이미화·임승렬·조부경(2005). 한국 유치원/보육교사교육의 역사와 미래: 유아교육·보육의 질적 향상과 유아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사교육. 한국 유아교육학회 2005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정기 학술대회 자료.
- 유희정·문무경·원명순·김애리·김홍희(2007). 보육시설조사자 경력 및 호봉체계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이미화·유희정(2004). 보육교사의 근무환경 및 직무실태 분석. 한국여성개발원.
- 이미화·장명림·신나라·김문정·김현철(2006). 육아지원인력의 수급전망과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이연승·조미나(2005). 보육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0(1), 41-67.
- 지성애·최미숙(2006). 보육교사 자격제도의 실시현황과 과제. *한국영유아보육학*, 45, 27-52.
- 표갑수·김형식·지성애·허선·백선희(1998). 보육인력의 수급 적절성 및 전문성에 대한 평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황윤세(2007). 보육교사의 자기평가에 의한 전문성 인식: 성취동기 및 사고양식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4, 175-194.
- 현은강·태진(2000). 보육환경의 질과 영유아의 적응-인천시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3), 25-42.
- Berk, C. L. (1985). Relationship of educational attainment, child-oriented, job satisfaction and career commitment to caregiver behavior toward children. *Child Care Quarterly*, 14, 103-129.
- Honig A. S. & Hirallal, A. (1998). Which counts more for excellence in childcare staff: Years in service, education level, or ECE coursework?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45, 31-46.
- Katz, L.(1996). Child development knowledge and teach preparation: Confronting assumption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1, 135-146.

- Sarcho, O. N. & Spodeck, B. (1993). Professionalism and the preparation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ractitioner: Early childhood development and care. Gordon and Breach Science Publisher.
- Spodek, B. S. (1988). Implicit theorie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Foundation for professional behavior. In B. Spodek, O. N. Sarcho, & D. L. Peters (Eds.), Professionalism and the early childhood practitioner. NY: Teachers College Press.
- Sternberg, R. J., & Grigorenko, E. L. (1997). Are cognitive styles still in style? *American Psychologist*, *52*, 700–712.
- Whitebook, M., Howes, C., & Philips, D. (1989). Who cares? Child care teachers and the quality of care in America. *Young Children*, *45*(1), 41–46.



주제발표 2

---

보육시설장 자격제도 개선 방안 및  
보육교사교육원 평가 방향

김 의 향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장)



# 보육시설장 자격제도 개선 방안 및 보육교사교육원 평가 방향

(재)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김의향 국장

## I. 서론

### 1. 보육시설장의 역할 및 전문성

- 보육시설장은 보육시설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대표자로서 보육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책임자이며, 보육과정의 계획과 관리 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생활지도 및 건강관리, 보호자와의 상담 등을 수행하는 보육 전문가, 보육교사를 비롯한 보육종사자를 이끄는 리더의 역할을 담당하는 포괄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자임(김영명, 2006; 김의향·지성애·황성원·정지연, 2007; Decker & Decker, 2001; Simons, 1998).
- 이처럼 보육종사자와 영유아가족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시설장의 전문성은 보육 프로그램의 질을 예측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며(Bloom & Rafanello, 1994), 보육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개선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침.
- 보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끊임없이 논의 되고 있으며, 특히 보육시설장의 전문성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일관성 있게 지적하고 있음(백선희·서문희, 2004; 지성애, 2001; 지성애·김의향·황성원·정지연, 2008; 표갑수·백선희, 1999; Bloom and Sheer, 1992; Bredekamp, 1989; Sciarra and Dorsey, 2002).
- 김은설·안재진·최윤경·김의향·양성은·김문정(2009)은 보육시설장의 전문성을 구성하는 요인으로 (1) 보육교사로서의 경험과 연륜, (2) 올바른 아동관과 보육에 대한 철학·비전의 제시, (3) 시설 운영에 대한 행정적 능력과 관리 기술(시설, 재정, 인력), 그리고 (4) 리더십과 원만한 대인관계를 제시함. 또한 Hayden(김의향 외 2007, 재인용)은 보육시설장의 전문성 단계를 기술적 능력(예산, 운영관련 서류관리, 설비관리, 규정준수, 아동의 안전 및 건강, 보육서비스 제공), 보육종사자와의 관계(상호관계 형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보육프로그램 운영 지식과 기술(보육운영의 계획과 실제, 영유아 교수방법 수행과 평가, 부모교육), 공적관계(지역사회, 행정 및 유관기관 연계), 상징적 능력(보육철학, 지역사회 문화계승과 유지, 정체성 확립, 리더십)의 다섯 단계로 나누어 제시함.
- 그러나 현재의 보육시설장 자격제도를 통해 위와 같은 요인의 전문성을 갖춘 보육시설장을 배출하고 있는가는 제고해 볼 필요가 있음.

- 보육인력의 전문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으로는 양성과정, 재교육과정, 적절한 수급, 근무여건과 사회적 인식 등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적합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자에게 시설장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전문성 제고를 위한 첫 단계라 할 수 있음.

## 2. 보육시설장 자격제도의 변천

-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1962.8.27 ~ 1991.8.7)
  - 아동복지법(1962.1.1 ~ 1981.4.12): 아동복지시설의 하나인 탁아시설의 장은 ‘아동복지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라고 정의만 규정되어 있을 뿐 보육시설장 및 기타 종사자의 자격 기준에 대한 규정은 없음.
  - 유아교육진흥법(1983.3.1 ~ 1989.9.19 시행): ‘새마을유아원’은 기존의 아동 보육 기능을 담당했던 어린이집, 농번기 탁아소, 새마을 협동 유아원, 민간 유아원을 통합한 시설로 유아를 보육하거나 유아와 영아를 함께 보육하는 기관이며(유아교육진흥법 제2조), 새마을유아원의 원장은 유아교육진흥법시행령에서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로 명시함.
  - 아동복지법(1989.9.19 시행령 개정 ~ 1991.8.1): 1989년 9월 19일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시설장, 총무, 보육사 1·2·3급의 자격 기준을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2조 [별표2]에 세부적으로 제시하였으며, 해당 기준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후에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에 명시하여 탁아시설, 새마을 유아원, 사업장 탁아시설에 채용된 시설장 중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2조 [별표2]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장 자격이 있는 자는 보육시설장 자격을 인정하였음.

〈표 1〉 영유아보육법 제정 전 보육시설장 자격기준

구분	「아동복지법 상 시설장, 총무, 교사 종사자 자격기준」
자격 기준	1.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관련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3. 전문대학에서 제1호의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또는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제1호 이외의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보건사회부장관이 실시하는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서 사회복지에 관하여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5. 보육사 1급, 직업훈련교사 또는 간호사 및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정교사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소정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5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8.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탁아시설에 한한다)

- 종전 영유아보육법(1991.8.8 ~ 2005.1.29)
  - 1991년 8월 8일 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보육시설장 자격기준 명시.

- 종전법에 의한 보육시설장의 자격 종류는 일반보육시설장과 40인 미만 보육시설장(1996.1.6 개정 전 30인 미만 보육시설장)으로 나뉘며, 40인 미만 보육시설장의 경우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는 모두 해당됨.
- 보육시설장의 자격을 위해 필요한 경력은 ‘사회복지업무 경력<sup>5)</sup>’으로 정의되었음.
- 또한 보육시설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령에 의한 자격 인정 기준만 갖추면 별도의 자격증 없이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로 같음하여 자격을 인정하였음.
- 이 시기는 정부의 지속적인 보육시설 확충계획에 따라 보육시설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던 때로,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하기 위해 자격기준이 엄격하지 않았으며(표갑수·백선희, 1999), 다양한 직종, 경력을 지닌 자들이 손쉽게 보육시설장으로 근무할 수 있었음. 오히려 시설장 자격기준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 이후 두 차례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격기준은 완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됨.
  - 1996년 1월 6일 시행령을 개정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고등학교 정교사로서 10년 이상 교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자격기준에 추가하였고, 대학 등의 교수가 영유아보육에 관한 연구·보육실습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의 시설장 겸직을 허용함.
  - 1998년 9월에는 종교단체의 장이 보육시설의 장으로 겸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외국에서 취득한 시설장 및 보육교사 1급 해당자도 시설장의 자격을 인정.
- 그러나 지나치게 개방적인 자격조건은 보육시설장의 전문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계속 지적되었음(표갑수·김형식·지성애·허선·백선희, 1998; 백선희·서문희, 2004).
- 또한 보육시설 및 시군구청에서 시설장 자격의 인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복잡한 시설장 자격 기준에 대한 통일된 해석 주체의 부재로 시·군·구청 보육담당자는 시설장 자격 요건 심사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로 인해 자격 요건이 미비한 자들도 시설장의 자격을 인정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기도 하였음.

**<표 2> 종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장 자격기준**

구분	종전 영유아보육법(1991.8.8 ~ 2005.1.29)
자격 기준	1. 4년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과를 전공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석사이상의 학위등록을 한 자 3.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1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 자 5.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간호조무사로서 사회복지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사회복지업무 경력의 인정범위

-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한 경력
- ②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 근무한 경력
- ③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에 근무한 경력
- ④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근무한 경력(보육시설장 자격기준 제9호(표2 참조) 해당자에 한함)

구분	종전 영유아보육법(1991.8.8 ~ 2005.1.29)
	7.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10년 이상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1996.1.6 개정 시 추가> 8.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0.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영유아 3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자(영유아 4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1996.1.6 개정> 11. 학식 덕망이 높은 자로서 시·군 또는 구 지방보육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중앙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1996.1.6 개정 시 삭제> 12. 보건사회부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시설장 양성교육과정을 마친 자  ※ 비고: 외국에서 시설장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 및 한글 번역본에 대하여 재외공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

□ 현행 영유아보육법(2005.1.30 이후)

- 전문적인 자격 검정 및 자격증 발급 체계를 구축하고 보육시설장 자격관리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는 2006년 12월 30일부터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보육시설장의 전문성을 강화함.
- 종전 일반보육시설장, 40인 미만 보육시설장으로 분류되었던 자격종류를 일반,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장으로 다양화함.
- 또한 의사, 간호조무사, 중·고등학교 교사 등의 자격기준을 삭제하였으며, 겸임 규정을 삭제하여 자격기준을 강화함.
- 자격 취득을 위한 필요경력은 ‘보육업무 경력’ 또는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으로 제한됨.
- 그러나 여전히 다양한 자격 취득 경로, 짧은 경력 요건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표 3〉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장 자격기준

구분	현행 영유아보육법	
자격 기준	일반보육시설	1.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2.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6.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

구분	현행 영유아보육법	
		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가정보육시설		1. 일반기준에서 정한자격을 갖춘 자 2.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영아전담 보육시설		1. 일반기준에 정한 자격을 갖춘 자 2.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과를 전공한 자 (2) 장애아보육시설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3)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아보육 직무교육을 받은 자
대학 또는 교육훈련시설 이 운영하는 보육시설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학의 전임강사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3. 현행 보육시설장 자격제도의 문제점

#### □ 자격증 공급의 과다

- 현재 보육시설장 자격은 경력이 충족되면 별도의 자격 교육이나 시험 없이 부여되며, 이는 유치원 원장자격증 취득과 견주어 볼 때, 비교적 용이하게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구조임.
- 2006년 12월 30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교부 된 전체 보육시설장 자격증은 총 116,813건임.

<표 4>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 교부 현황

(2006.12.30 ~ 2009.12.31)						단위: 건
구분	일반	40인 미만	가정	영아전담	장애아전담	계
2007년	32,916	15,350	0	17	1,353	49,636
2008년	21,784	14,058	4	8	819	36,673
2009년	18,500	10,280	984	41	699	30,504
총계	73,200	39,688	988	66	2,871	116,813

- 실제 보육시설장 자격증 취득자는 112,471명<sup>6)</sup>이며, 2009.12.31 기준 현직에 종사하는 보육시설장 35,404명과 비교할 때 많은 유휴인력이 있음을 알 수 있음.

6) 이 중 보육교사 자격증과 보육시설장 자격증을 모두 취득한 자는 100,024명으로 보육시설장 자격증 취득자의 약 86%임.

- 이와 같은 보육시설장 자격증의 과잉 공급은 보육시설장에 대한 사회적 위상의 저하뿐만 아니라 처우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여 보육시설장의 전문성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 짧은 경력 요건

- 현행 보육시설장 자격기준에 따르면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이후 2년의 경력만 있다면 가정보육시설장 자격 취득이 가능하므로, 고등학교 졸업 후 1년 양성과정을 수료하여 3년의 보육업무경력이 있다면 가정보육시설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또한 보육교사 1급(보육교사 2급 취득 후 3년) 자격 취득 이후 2년의 경력을 갖추면 일반 보육시설장 자격 취득이 가능함. 따라서 일반보육시설장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보육교사 2급 취득 후 최소 5년의 경력만이 필요함.
- 유치원 원장자격의 경우 유치원 정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뒤 유치원 정교사 1급(정교사 2급 취득 후 3년), 원감(정교사 1급 취득 후 3년)의 자격을 차례로 갖춰야 하며, 원감 자격을 취득한 뒤 다시 3년의 경력이 있어야만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한 조건을 충족함. 따라서 최소 9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필요함. 그러나 원장 자격연수는 연간 교육대상이 제한되어 있어 경력이 충족되더라도 바로 자격 연수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림.
- 경력과 연령이 높을수록 보육시설장의 전문성이 높아진다는 연구보고서 등(표갑수의, 1998; 지성애·김형식, 1999)을 참고할 때, 보육시설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안 모색의 핵심은 보육시설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일정 수준 제한하고, 보육현장 실무 경력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함(지성애, 2010).

#### □ 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교육의 부재

- 현행 보육시설장 자격기준은 보육교사가 일정기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또는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을 쌓은 경우 취득할 수 있으며, 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교육이나 시험이 존재하지 않음.
- 그러나 보육교사의 역할에서 보다 확장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보육시설장의 능력을 보육교사의 경력만으로 보장하지 못함.
- 유치원 원장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360시간의 자격연수를 사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모든 과목에서 6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하고 전체 8할 이상 반드시 수업에 참석해야 함.
- 따라서 보육시설장 자격 취득 전 사전교육을 통해 시설장으로서 새롭게 대처해야 할 사안들을 미리 알고 그 역할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육시설장으로서의 자세와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 □ 다양한 자격취득경로로 인한 전문성 저하

- 현행 보육시설장 자격기준은 보육업무와는 관련성이 적은 다양한 전문적인 배경을 가진 인력이 보육시설의 장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나, 이는 과거 보육계의 현실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보육시설장으로서의 전문성을 저하시키고 있음(서문화·백선희, 2004). 또한 이전의 자격기준은 보육시설장의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늘어나는 보육시설의 수만큼 시설장을 공급하기 위한 기준이었음.

- 종전법에 의한 보육시설장 자격기준 중 공무원, 의사, 간호조무사, 중·고등학교 교사 순으로 보육시설장 자격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표갑수 외, 1998), 현행 자격기준에서는 의사, 간호조무사, 중·고등학교 교사의 기준은 삭제되었음. 그러나 여전히 공무원, 간호사의 자격으로 보육시설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전문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지성애, 2010; 표갑수, 2010).
- 보육시설장은 보육교사와는 다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보육교사 출신으로 국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으나, 현재 보육현장 및 관련 학계에서는 보육시설장의 역할과 전문적 자질에 관한 기본 이론에 근거할 때에 영유아보육 관련 전공으로 국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지성애, 2010; 표갑수, 2010).

## II. 보육시설장 자격제도 개선방안

### 1. 보육시설장 사전교육 도입

- 보육시설장은 보육교사의 역할에서 좀 더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므로 사전교육을 통해 보육교사와는 차별화된 기관 운영자로서의 업무능력을 고양하여 보육시설장의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 있음.
- 보육시설장 자격 취득 전 사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함으로써 보육시설장의 수급을 조절하고, 현직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격을 취득하도록 하여 자격에 대한 의미와 성취감을 높일 수 있게 함.
- 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교육은 보육교사 1급의 직무교육 중 하나로 운영하여, 시설장 자격 취득 전 시설장의 역할과 직무를 사전에 습득할 수 있도록 함.
- 사전교육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대체교사 지원의 어려움,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한 교육 불참여 등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80시간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됨(보육교사 승급교육 80시간임).
- 보육교사 승급교육의 경우, 평가시험에서 통과한 자만이 승급교육 수료를 인정받고 있음. 보육시설장 사전교육도 이와 마찬가지로 평가시험을 실시하고 이를 통과한 자에 한해 교육이수를 인정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 있음.
- 현재 보육시설장의 시설장 신규교육, 일반직무교육은 40시간이며, 유치원 원장의 자격연수는 360시간<sup>7)</sup>으로 이루어져 있음.
  - 유치원 원장 자격연수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은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일반교양 교과(10~20%), 원감과정 이수 후 계속 이수하여야 할 교직교과 및 특기 적성 활동에 관한 교과(10~20%), 교육재정 및 조직 영역 등 학교 운영 관리에 필요한 전문분야에 관한 교과(70~80%)로 구분되어 있음.

7) 2008년도부터 180시간에서 360시간으로 늘어남.

<표 5> 유치원 원장의 자격연수 교육과정

유형	기간(총10주)	내용구성	세부교육내용	연수기관
집체연수	6주	교양 + 교직 + 학교경영	- 일반교양 - 국가관·교직관 함양 - 교육정책의 이해 - 교육학 일반이론 - 직무기술습득 - 교수·학습방법 - 유치원 교육과정 관련 전문지식 - 유아에 대한 이해와 생활지도 - 유치원 및 학급 경영관리 - 교원의 교육연구능력 신장	한국교원대학교
민간위탁연수	1주			
멘토링연수	1주			
해외연수	1주			
재택연구보고서 및 원격연수	1주			

자료: 김은설 외(2009), 재인용.

- 보육시설장 보수교육은 신규직무교육과 일반직무교육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시설장 직무교육의 교육영역은 보육교사 직무교육영역과 동일하며, 교육시간도 40시간으로 시설장 직무를 습득하기에 충분하지 못함.
- 또한 신규직무교육의 경우 실제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않는 지역이 많아 교육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신규 시설장의 수가 많거나, 일반직무교육에서 경력 시설장과 함께 교육을 받기도 하므로 신규 시설장에게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만 집중하기 어려움.

□ 현재 보육인력의 보수교육 대상자를 현직 종사자로 제한하고 있는데, 현직에 종사하고 있지 않다가 시설장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교육비 자부담 등)할 필요있음.

<표 6> 보육시설장 보수교육 과정

영역	시설장 신규직무교육		시설장 일반직무교육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보육기초	영유아보육법과 보육관련 법의 이해 아동학대와 아동권리모니터링의 이해 시설장의 역할과 윤리(필)	6시간	·보육정책의 전망과 과제 ·아동학대와 아동권리모니터링의 이해 ·시설장의 역할과 윤리(필)	6시간
발달 및 지도	·연령별 영유아 발달 특성의 이해 ·영유아 부적응 행동지도 ·장애아 통합보육 운영	6시간	·관찰일지 작성 및 발달검사의 활용 ·영유아기 뇌 발달 이해와 조기교육 ·장애아 통합을 위한 협력적 접근의 실제	6시간
영유아교육	·표준보육과정의 이해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교구교재 선정의 원리	6시간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보육계획 작성 지도 ·교구교재 선정과 평가	6시간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영유아 전염성 질환과 대응 ·보육시설 급식관리 ·보육시설 안전관리와 사고대응(필)	6시간	·영유아 건강관리 실제 세미나 ·급식관리 실제 세미나 ·보육시설 안전문제 대응(필)	6시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	·부모오리엔테이션의 실제 ·다문화가정의 지원체계 이해 ·지역사회 연계의 이해와 보육	6시간	·부모 상담사례 세미나 ·부모교육의 이론과 실제 ·다문화가정의 지원체계 이해 ·보육과 지역사회 연계의 전망과 과제	8시간

영역	시설장 신규직무교육		시설장 일반직무교육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보육사업의 운영	· 보육의 질과 평가인증 · 보육시설 인사관리 · 보육시설 재정 및 사무관리 · 보육시설 환경 및 설비관리 · 조직문화와 리더십 · 보육정보화시스템의 이해와 활용(선택)	10시간	· 원내 교사교육의 계획과 실행 · 보육시설운영 평가 세미나 · 우수보육시설 사례분석 · 조직문화와 리더십	8시간
계	21과목	40시간	20과목	40시간

자료: 보건복지부(2010).

## 2. 보육시설장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 인정범위 제한

- 종전 영유아보육법 시기까지 사회복지업무 경력으로 정의되어 있던 보육시설장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요건이 현행 영유아보육법 개정 이후 가정보육시설장은 ‘보육업무 경력’, 일반보육시설장은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으로 제한되었음.
- 그러나 해당업무경력 모두 보육시설 근무자의 직종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취사부, 사무원, 운전사 등으로 보육업무경력을 인정받아 승급요건을 충족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
- 따라서 보육시설장 자격 취득을 위한 업무경력을 보육교사와 동일하게 ‘보육업무 경력’으로 제한하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에서 장 또는 보육전문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 보육사로 근무한 경력,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만을 포함하는 방안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표 7> 보육관련 업무경력의 인정범위**

현행 보육업무경력 (보육교사/가정보육시설장)	현행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일반보육시설장)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보육정보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종일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정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교원(원장, 원감, 교사)으로 근무한 경력만 해당되며, 같은 법 제23조에 의한 강사, 명예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은 해당하지 않음.	나)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에서 근무한 경력
해당사항 없음	다)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
	라)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해 장애영유아생활시설에서 장애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마)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유치원 및 초등학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바) 종전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

현행 보육업무경력 (보육교사/가정보육시설장)	현행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 (일반보육시설장)
	사)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근무한 경력
↓	
보육업무 경력 개선방안	
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서 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나)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에서 장 또는 보육전문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다)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 보육사로 근무한 경력 라)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	

### 3. 보육시설장 자격기준 조정

#### 가. 가정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 상향조정

<표 8> 가정보육시설장 자격기준 개선방안

종전	현행	개선방안
해당사항 없음	보육교사 2급 + 2년 보육업무 경력	보육교사 1급 + 1년 보육업무 경력 + 시설장 사전 교육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이후 2년의 보육업무 경력이면 가정보육시설장 자격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육교사 1급 자격 전에 시설장 자격 취득이 가능하였음. 따라서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시설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시설장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함.
-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후 1년의 보육업무 경력을 충족할 경우 가정보육시설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함으로서 가정보육시설장의 전문성을 확보함.
- 본 개선방안으로 변경될 경우 가정보육시설장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이후 5년의 보육업무 경력이 필요함. 이로 인해 가정보육시설장 자격 취득자가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으나, 자격기준 개선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은 현행법 기준에 의한 가정보육시설장이 꾸준히 배출될 것으로 예측됨.
- 2009.12.31 기준 전국의 가정보육시설은 17,361개이며, 가정보육시설에 등록된 아동 수는 236,827명(시설 1개당 아동 수 13.6명)으로 정원 306,719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가정보육시설장 자격 취득자의 수가 일부 감소하더라도, 수요자가 가정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가정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이 상향 조정될 필요성이 있음.

나. 일반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 상향조정

<표 9> 일반보육시설장 자격기준 개선방안

종전	현행	개선방안
보육교사 1급 + 3년의 사회복지업무(4년제 대학) + 5년의 사회복지업무(2년제 대학, 승급자)	⇒ 보육교사 1급 + 2년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 보육교사 1급 + <b>3년</b> 의 보육업무
대학원 관련학과 석사 이상		
유치원 정교사 + 5년의 사회복지업무 또는 + 10년의 교육업무(유치원)	⇒ 유치원 정교사 2급 + 5년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 유치원 정교사 <b>1급</b> + <b>3년</b> 의 보육업무
유치원 원장 자격 소지자	⇒ 유치원 원장 자격 소지자	⇒ 유치원 원장 자격 소지자
초등학교 정교사 + 5년의 사회복지업무 또는 + 10년의 교육업무(유치원)	⇒ 초등학교 정교사 + 5년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 삭제
사회복지사 2급 + 3년의 사회복지업무	⇒ 사회복지사 1급 + 5년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 삭제
간호사 + 5년의 사회복지업무	⇒ 간호사 + 5년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 삭제
7급 이상의 공무원 + 3년의 사회복지행정업무	⇒ 7급 이상의 공무원 + 5년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 삭제
중·고등학교 정교사 + 5년의 사회복지업무 또는 + 10년의 교육업무(유치원)	⇒ 삭제	⇒ 해당사항 없음
의사 + 1년의 진료업무		
간호조무사 + 7년의 사회복지업무		
영양사 + 5년의 사회복지업무		

- 초등정교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공무원 등 보육업무 경력이 없는 타 자격소지자가 보육시설장이 되는 경로를 제한하여, 보육시설의 장으로서의 전문성 확보.
- 실제 보육관련자가 아닌 자격기준(초등정교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공무원)으로 일반 보육시설장 자격을 취득한 자는 2006년 보육시설장 자격증 발급 이후 총 49건(전체 일반보육시설장 자격 취득자의 약 0.04%)으로 소수에 불과함.
-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 이후 현행 2년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을 3년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함. 본 개선방안으로 변경 시 보육교사 2급 취득 후 총 6년의 경력 요구됨.
- 유치원 정교사 2급 취득 후 5년의 경력요건을 유치원 정교사 1급 취득 후 3년의 경력으로 조정함. 본 개선방안으로 변경 시 유치원 정교사 2급 취득 후 총 6년의 경력 요구됨.

다.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장 자격기준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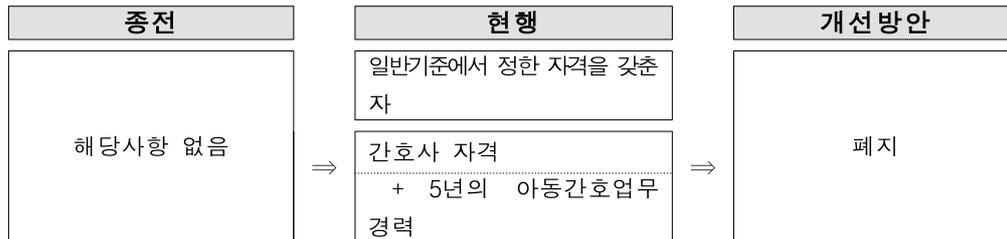
<표 10>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장 자격기준 개선방안

종전	현행	개선방안
해당사항 없음	일반시설장의 자격 + ①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장애인 복지 및 재활관련학과 전공 또는 ②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에서 2년의 보육업무 경력 또는 ③ <b>장애아보육 직무교육 이수</b>	일반시설장의 자격 + ① 대학(전문대학 포함)에서 장애인 복지 및 재활관련학과 전공 또는 ②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에서 2년의 보육업무 경력 ③ <b>삭제</b>

- 전문적인 배려가 필요한 장애아를 보육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설장 자격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특성화된 자격종류를 신설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2005년 영유아보육법 개정 시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장 자격을 추가하였음(백선희·서문희, 2004; 서문희, 2001).
- 그러나 ‘대학의 장애인 복지 및 재활관련학과 전공자’, 또는 ‘장애전담 보육시설에서 만2년의 보육업무경력이 있는 자’의 자격기준에 비해 ‘40시간의 특별직무교육 만으로 자격 취득이 가능한 기준’은 형평성에 맞지 않음.
- 또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이 중요한 장애아보육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40시간의 교육만으로도 장애아전담 시설장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 따라서 특별직무교육 이수만으로 인정되던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장 자격기준 3호를 삭제하여, 자격 기준을 강화함.

## 라. 영아전담 보육시설장 자격 폐지

<표 11> 영아전담 보육시설장 자격기준 개선방안



- 현재 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의 보육시설장 자격 취득 기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또한 병원 소아과나 신생아실, 보건소 모자보건센터, 초등학교 보건실 등에서 근무한 아동간호업무 경력으로 보육시설장의 자격을 인정받는 것은 무리가 있음.
- 보육시설장 국가자격증 발급 이래 영아전담 보육시설장 자격증 취득자는 총66명(전체 시설장 자격증 교부자의 0.06%)으로 실제 영아전담 보육시설장 자격을 취득하여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많지 않음.
- 또한 일반보육시설장 자격 소지자가 영아전담 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전담 자격증 발급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III. 보육교사교육원 평가

### 1. 보육교사교육원 현황

- 보육교사교육원은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면서 법제화된 기관으로 보육시설의 급격한 확장에 필요한 보육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었으며, 현재 73개소의 보육교사교육원(민간 28개소, 대학부설 45개소)이 운영되고 있음.
- 2010년 3월 31일 기준 현직 보육교사 149,934명 중 41%(62,086명)이 보육교사교육원 수료자임(한국보육진흥원, 2010).
- 2009년도 11월부터 2010년도 2월까지 보육교사교육원을 수료하여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자는 9,819명이며, 6,743명(약 68%)이 현직 보육교사로 근무 중 임. 이 중 67%는 고등학교 졸업자이며, 31%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취득하였음(한국보육진흥원, 2010).
- 그러나 보육교사교육원 출신 보육교사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최소학력을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제한한 유치원 교사나 사회복지사와 비교하여 전문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이미정, 2009; 이미화·장명림·신나라·김문정·김현철, 2006). 국가자격증 발급 이후 실제 보육교사 3급 자격증 취득자 중 약 66%는 고등학교 졸업자임.

&lt;표 12&gt; 최종학력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증 교부 현황

(2005.4.1~2009.12.31)				단위: 건(%)
구 분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3급	계
대학원	6,062( 2.27)	1,483( 0.88)	174( 0.38)	7,719( 1.60)
대학교	73,907( 27.62)	20,422( 12.11)	5,266( 11.56)	99,595( 20.67)
전문대학	153,732( 57.45)	78,984( 46.82)	9,364( 20.55)	242,080( 50.24)
고등학교	24,281( 9.07)	51,116( 30.30)	29,944( 65.72)	105,341( 21.86)
기타*	9,622( 3.59)	16,684( 9.89)	813( 1.79)	27,119( 5.63)
전체	267,604(100.00)	168,689(100.00)	45,561(100.00)	481,854(100.00)

\* 국외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학력 미기재자 등이 해당함.  
 자료: 한국보육진흥원(2010). 내부자료.

- 또한 대학(교)를 졸업했다 하더라도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교육원 출신 보육교사의 경우 98%가 보육관련 학과가 아닌 기타학과 전공자임(한국보육진흥원, 2010).
- 1년이라는 짧은 교육기간 동안 많은 교과목을 이수하는 것(김남균, 2010; 김은설 외, 2009)에 대해 전문성의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음. 또한 보육교사교육원이 대량의 보육교사 공급을 위한 기관이었던 만큼 보육교사의 수급이 안정화되고, 보육정책의 방향이 질적 발전으로 전환된 현 시점에서 보육교사교육원이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음(김덕성, 2005a; 김정신·노은호, 2006; 표갑수, 2005).
- 뿐만 아니라 교(강)사의 전문성, 수업 내용, 학사 관리, 교재의 질 등의 측면에서 보육교사 3급 양성교육과정의 운영 및 관리의 미흡함이 지적되고 있음(서문화·이상현·임유경, 2000).
- 2009년 전국 보육교사교육원 전임교수 및 행정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육교사교육원 운영현황 조사(보육자격관리사무국, 2009)' 결과, 교수요원 중 외래교수의 비율이 전임교수에 비해 3~4배 높아 전문적인 교(강)사의 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교)의 경우 각 학과의 교(강)사가 보육정책, 국가차원의 보육프로그램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교재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에 반해 대부분의 보육교사교육원이 특정 교재 한 종류만을 사용(95.7%)하고 있었음. 그리고 교육과정의 실행이 어려운 이유로 기차재 및 시설설비의 어려움(컴퓨터 등)(28.1%)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아 전문교육기관으로써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 현황 또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해당 보육교사교육원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를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보육교사 3급 양성교육과정의 질 보장 및 개선을 위한 평가 실시에 대한 움직임으로 이어짐(김은설 외 2009; 김익균 2004; 황해익·박선훈·박성미·김정신, 2007).

## 2. 보육교사교육원 평가의 필요성

- 보육교사 3급 폐지, 보육교사교육원의 역할 변경 등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나, 가정보육시설 및 보육교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 등에는 여전히 보육교사 3급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 3급을 당장 폐지하거나 보조교사로의 역할전환 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보육교사교육원의 학사 및 운영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변별력 있는 평가를 실시하여, 3급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의 내실화 및 보육교사교육원의 역할 재정립과 질적 성장을 위한 자구적 노력 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궁극적으로는 보육교사교육원의 운영관리 개선을 통해 보육교사 3급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필요 있음.
- 2009년 전국 보육교사교육원 전임교수 및 행정실무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보육교사교육원 운영현황 조사(보육자격관리사무국, 2009)’ 결과, 보육교사교육원 평가에 대해 전임교수의 경우 긍정적인 의견이 62.5%, 보통이라는 의견이 20.3%, 부정적인 의견이 17.2%로 나타남. 또한, 행정실무자의 경우 긍정적인 의견이 33.3%, 보통이라는 의견이 43.5%, 부정적인 의견이 23.1%로 나타나, 보육교사교육원 내부에서도 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
- 객관적이고 타당한 평가를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지표와 평가 운영절차 및 방법의 개발이 필요함.

## 3. 보육교사교육원 평가사업 시행

### 가. 평가 주관기관

- 보육교사교육원 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를 주관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음.
- 김덕성(2005b)은 전국보육교사교육원이 평가의 주관기관으로 적절하다고 하였으나, 민간단체에서 주관할 경우, 평가에 참여시킬 수 있는 강제성이 없으며, 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각 보육교사교육원이 부담해야 하며, 평가 결과에 대한 공신력 부족, 결과에 따른 행·재정적 인센티브 제공이 어려운 단점이 있음.
- 국가기관에서 실시할 경우 평가 결과에 대한 행·재정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각 보육교사교육원의 평가비용을 경감시키고, 결과에 대한 공신력 확보도 가능함(이대균, 2009; 홍은주, 2009).
- 대학평가인정, 평생교육시설 평가인정 또한 교육과학기술부 주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관 평가인증제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의 실시가 민간 차원의 평가 실시에 비해 질 관리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대균·김선구, 2008)을 고려할 때 보육교사교육원 평가 역시 국가 차원에서 담당할 필요가 있음.

나. 평가 결과 활용방안

- 보육교사교육원 평가를 통해 보육교사교육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보육교사 3급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평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하는가가 중요함. 이에 평가결과를 보육교사 자격제도에 적용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 요구됨.
- 황해익 외(2007)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보육교사교육원의 경우 운영지원, 자율성 부여, 학점 차등 인정, 교수요원의 신분 보장 등 제도적, 재정적 수혜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함. 이대균·김선구(2009)는 평가결과를 보수교육 등 재교육 위탁기관 선정 시 반영하고, 교육비 자율화 등의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하자고 함. 또한, 주기적인 평가 실시와 등급제의 적용으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한 기관들의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미흡한 기관들의 경우 보완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의견(홍은주, 2009)도 있음.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 유아교육과를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평가결과를 최우수, 우수, 보통, 개선 요망 등으로 구분하고, 개선 요망 판정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였음.

<표 13> 보육교사교육원 및 유관기관 평가 관련 선행 연구

구분	필요성 및 목적	주관 기관	평가항목 및 지표	결과활용
보육교사교육원	김덕성 (2006)	·전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경영 및 재정 ·발전 계획 등 비전 ·교육 및 연구 ·학생, 교수, 직원 등	·정원 증원 및 감소 ·정책 수립 및 관련 법규의 제정에 활용 ·교육원 장단기 발전 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제공
	황해익 외(2007)	·전국보육교사교육원연합회 혹은 대학부설 보육교사교육원에서 대학과의 밀접한 연결과 지원으로 대행	·교육과정 운영 ·학적관리	·우수기관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수혜 마련
	이대균 외(2009)	·국가기관: 전문성과 재정적 권한을 갖춘 독립적인 평가인정 기관의 설립. ·보육교사교육원에 대한 평가 주관 ·전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보육교사교육원 평가 인정을 위한 연구개발 및 평가 실시. ·조력기관으로서의 역할	·교육과정 및 수업 ·교수 및 학생 ·교육여건	·평가결과에 따라 보수교육 등 재교육 위탁기관으로 선정하고, 교육비 자율화 등의 행·재정적 인센티브 부여

구분	필요성 및 목적	주관 기관	평가항목 및 지표	결과활용
유아교사양성대학	홍은주 (2009) ·보육교사교육원의 질적 수준 보장 및 질 개선 ·효율성 진작 ·문제점의 원인 및 개선방안 제시 ·훌륭한 인격과 높은 전문성을 가진 교사 양성	·국가기관	·보육교사 양성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의 운영 ·해당기관에서 양성되는 예비교사들의 수행	·주기적인 실시와 등급제의 적용으로 높은 등급을 받기위한 기관들의 개선 노력 유도 ·미흡한 기관들의 경우 보완 기회 부여
유아교사양성대학	임승렬 외(1998) ·교사교육의 질적수준 향상 ·교사교육의 수월성 확보	·민간 주도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교수학습활동 ·교수 및 학생 ·시설·설비 및 행·재정	·평가 결과의 공개 ·입학정원의 증감 등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의 차등화
사회복지교육기관	홍선미 (2009) ·사회복지교육의 정상화와 질 관리 ·양질의 전문인력 배출	·한국사회복지교육 협의회: 인정기관 ·인증분과위원회 또는 별도의 인증센터: 인증업무	·교육목표 및 교과내용(교과과정, 실습교육) ·교육환경 ·교수진 및 학생	

#### IV. 맺음말

-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된 이후 양적 팽창에 주력해온 보육사업은 2004년 동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수준 향상, 그리고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 강화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와 관련하여 영유아 대상의 실제 서비스 제공자인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음.
-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자격기준을 재정비하고, 양성교육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이 보장된 보육교사와 보육시설장을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함.
- 보육시설장의 경우 사전교육을 도입하여 보육시설의 관리자로서의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경력 요건을 강화하여 보다 준비된 보육시설장의 자격을 갖추도록 해야함.
- 또한 보육인력의 양성교육과정 개선과 더불어, 보수교육체계를 개편하여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는 양질의 재교육을 제공할 필요있음.
- 이와 더불어 보육인력의 처우 개선이 동반되어야 함. 특히 유능한 인재들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호봉체계가 개편되고, 대체교사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근무여건 및 보육환경 개선에도 지속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함.

[별첨]

<표 13> 개선방안에 따른 자격취득 시기

13년차								
12년차								
11년차								
10년차								
9년차				일반시설장				
8년차			(시설장	↑				
7년차	일반시설장	사전교육	가정시설장	↑	일반시설장	(시설장	↑	
6년차	↑	(1급 승급)	1급	↑	일반시설장	사전교육	가정시설장	
5년차	1급		↑	↑	↑	사전교육	가정시설장	
4년차	(1급 승급)	가정시설장	↑	↑	1급	(1급 승급)	1급	
3년차	↑	(2급 승급)	2급	(1급 승급)	가정시설장	↑	↑	
2년차	2급		↑	↑	↑	↑	↑	
1년차	(2급 승급)	3급	↑	↑	2급	↑	2급	
<b>경력</b>	승급교육	자격구분	승급교육	자격구분	승급교육	자격구분	승급교육	자격구분
	현행		개선방안		현행		개선방안	
	<보육교사교육원 수료자>				<대학(교) 졸업자>			

※ 보육교사 개선방안은 '주제발표 1'에 근거함

## 참 고 문 헌

- 김남균(2010). 보육교사 자격제도에 대한 보육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덕성(2005a). 우수보육교사(3급) 양성을 위한 보육교사교육원의 운영개선방안. 생활과학연구, 10, 50-63.
- 김덕성(2005b). 보육교사교육원 종합평가인정제 실시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도 보육교사교육원 연합회 제8회 세미나 자료집, 9-38.
- 김덕성(2006). 보육교사교육원 종합 평가 인정제 실시 방안. 생활과학연구, 11, 32-44.
- 김영명(2006). 보육시설장의 직무와 교육 요구에 기초한 현직교육 내용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설·안재진·최윤경·김의향·양성은·김문정(2009). 보육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의향·지성애·황성원·정지연(2007). 보육시설장 자격보완교육 연구. 여성가족부.
- 김익균(2004).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보육교사교육원 발전방안. 경기도 보육교사교육원 연합회 제7회 보육세미나 자료집, 31-47.
- 김정신·노은호(2006). 전문직으로서의 보육교사와 자격제도. 한국여성교양학회지, 15, 207-234.
- 백선희·서문희(2004).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자격제도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39, 171-195.
- 보건복지부(2010). 2010 보육사업안내.
- 보육자격관리사무국(2009). 보육교사교육원 운영 현황 조사 사업보고서. 내부자료.
- 서문희·백선희(2004). 보육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대안 연구. 여성부.
- 서문희·이상현·임유경(2000). 보육서비스 질 향상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2001). 보육인력 자격관리체계 개선방안. 21C 보육사업 선진화를 위한 보육제도 개선방안. 보육발전위원회·기획단,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대균·김선구(2008). 보육시설과 유치원 평가제도의 개선을 위한 논의. 열린유아교육연구, 13(3), 165-180.
- 이대균·김선구(2009). 보육교사교육원 평가인증제 시행을 위한 논의. 열린유아교육연구, 14(4), 117-136.
- 이대균(2009). 보육교사교육원과 보육교사 질 관리체계 확립 방안에 대한 토론. (사)전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제1회 학습세미나 자료집, 111-115.
- 이미정(2009). 보육교사 자격제도 개선 방안. 한국보육학회지, 9(4), 113-128.
- 이미화·장명림·신나리·김문정·김현철(2006). 육아지원인력의 수급전망과 전문성 제고 방안 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 임승렬·박은혜·조부경(1998). 유아교사 양성대학 평가인정제에 대한 요구조사. *유아교육연구*, 18(1), 171-204.
- 지성애·김형식(1999).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의 전문성에 대한 질적 평가. *한국영유아보육학*, 17, 27-55.
- 지성애·김의향·황성원·정지연(2008). 보육시설장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모형 개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53, 1-27.
- 지성애(2001). 영유아 보육시설장과 교사의 전문적 자질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27, 138-168.
- 지성애(2010). 보육시설장의 자격 강화와 전문성 확장을 위한 대안 모색. *한국영유아보육학*, 61, 63-88.
- 표갑수·김형식·지성애·허진·백선희(1998). 보육인력의 수급 적절성 및 전문성의 질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표갑수·백선희(1999). 보육인력(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제도 및 전문 유지 환경에 대한 평가. *한국영유아보육학*, 17, 57-96.
- 표갑수(2005). 한국 보육사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 40, 139-163.
- 표갑수(2010). 보육인력(시설장, 보육교사)의 복지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영유아보육학회 2010 춘계학술대회.
- 한국보육진흥원(2010). 2010년도 보육종사자 자격통계관리 1/4분기 보고서. 내부자료.
- 황해익·박선희·박성미·김정신(2007). 보육교사교육원 운영 현황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75-95.
- 홍선미(2009). 한국사회복지교육인증제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사회복지사 전문화 방안을 위한 자격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자료집, 7-42.
- 홍은주(2009). 보육교사교육원과 보육교사 질 관리체계 확립 방안. (사)전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제1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89-110.
- Bloom, P. J. and Rafanello, D.(1994).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of early childhood center directors: key elements of effective training models. National-Louis University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 Bloom, P. J. and Sheere, M. 1992. The effect of leadership training on child care program quality.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7, 579-594.
- Bredenkamp, S. R. 1989. Regulating child care quality: Evidence from NAEYC's accreditation system. Washington, DC; NAEYC.
- Decker, C. A. & Decker, J. R.(2001). Planning and administering early childhood programs. NJ: Prentice-Hall.
- Sciarra, D. J. and Dorsey, A. G. 2002. Leaders Supervisors in Child Care Programs. USA: Delmar Pub.
- Simon, J.(1988). Administering early childhood services. Sydney: Sydney College of Advanced Education.

## 토 론

---

김명순(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백선희(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미정(여주대학 보육과 교수)

지성애(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강무섭(한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부회장)

김용희(한국보육시설연합회 국공립보육시설분과위원장)

원준호(예남어린이집 원아부모)

이혜수(인왕어린이집 보육교사)



## 보육선진화를 위한 보육교사 및 시설장 전문성 향상에 관한 개선안 논의

김 명 순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우리 주변의 여러 직종 중에 전문 영역이라고 간주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몇가지 조건들이 충족될 것을 모두 기대할 것이다. 우선 훈련 기간이 길고 훈련 내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 누구나 진입하기가 수월치 않다. 그러나 관련된 훈련이 끝난 후에는 그에 상응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사회경제적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인 근무여건에서 일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약 누구나 쉽게 진입이 가능하고, 누구나 짧은 기간에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면 그 영역은 전문성이라는 용어가 적합하지 않으며, 그 자격증으로는 좀 더 수준높은 근무 여건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본인은 두 분이 발표하신 보육교사와 보육시설장 자격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는 바이다. 그러나 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두 가지 문제를 먼저 꺼내고자 한다.

### 첫째, 보육교사와 보육시설장의 고등학교 학력에 대한 문제와 논의

보육교사나 시설장의 전문성 향상에 대한 논의에서 학력이 우선 논의거리가 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다른 직종에서 학력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대학진학률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학진학률이 1990년에 33.2%이었으나 이후 매년 높아져 2004년도부터 80%라는 매우 높은 수치를 유지해오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처음으로 여성의 진학률(82.4%)이 남성(81.6%)을 앞질렀다는 보고가 나왔다(2010.3.7. BBS시사)<sup>8)</sup>. 이처럼 고등학교 졸업 여성 10명중 8명이 2년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만여명의 2,3급 보육교사 신규자격취득자의 20% 가량이 3급 보육교사 자격자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한, 한국보육진흥원의 2010년 6월 자격검정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총 13만명의 보육시설장이 자격증을 발급받았으나, 이중에서도 상당수의 시설장이 3급 또는 과거 2급 보육교사교육원의 고졸 이상 자격을 가진 시설장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복지국가인 스웨덴이나 국공립이 많은 일본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보육의 질적 수준이 그리 높다고 할 수 없다.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하기 때문에 대기업 등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체인형 보육시설 등이 상당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런 곳들은 외형은 매우 크고 매력적으로 꾸며놓았지만 실제 교사나 보육내용을 들여다보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또한 주마다 교

8) [http://www.bbsi.co.kr/news/news\\_view.asp?nIdx=442078](http://www.bbsi.co.kr/news/news_view.asp?nIdx=442078)

사임금이나 보육의 질적 격차가 커서 한마디로 미국의 보육 수준을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는 그 중 비교적 노력을 하고 있는 주이다.

지역 성인의 학력이 다른 주나 지역에 비해서 좀 더 높은 캘리포니아 주의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예를 들고자 한다. 샌프란시스코 지역은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전체 지역 성인 중 4년제 학사학위소지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편이어서 43%이고, 2년제 졸업자인 22%까지 합하면 총 65%가 2년제 이상의 학위(AA, AS, BA Degree)를 소지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보육종사자들의 학력을 보면, 가정보육시설장은 74%, 가정보육이외의 시설장은 87%이상 그리고 교사들은 99% 이상이 2년제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있다(Whitebook, et al., 2004)<sup>9)</sup>. 이 결과는 2003년도의 것이며 이후 2005년도의 비율은 ( )안에 다시 제시하였는데, 4년제 학사학위소지자인 가정보육시설장의 수치만 감소하였을 뿐 모든 수치가 향상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고등학교 졸업자 중 가정보육시설장은 18%, 보조교사는 7%였고 가정이외의 시설장이나 교사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enter for the Study of Child Care Employment, 2006). 위의 2006년도 결과에서 보육교사의 경우 5년 이상 한 기관에 있는 비율은 41%, 보조교사는 34%, 그리고 시설장은 54%였다고 하였다. 이처럼 전체 지역 성인의 학력에 비해서 보육에 종사하는 (보조)교사나 시설장들은 더 높은 학력을 소지하고 있음은 전문성을 논할 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일 것이다.

<표 1>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지역의 보육교사와 시설장의 학력

	지역 성인전체	가정보육 시설장	보조교사	교사	시설장 (가정보육시 설외)
4년제 학사 학위이상학력	43%	21%(19%)*	14%	49%(50%)*	87%(88%)*
2년제 대학 학력	22%	53%(63%)*	(79%)*	(50%)*	(12%)*
계	65%	74%(82%)*	93%*	99%(100%)*	99%

\* ( ) 숫자는 2005년도의 자료를 더 추가한 것임<sup>10)</sup>

\*\* 미국 전역으로 보았을 때 2007년에 교사는 약 20%정도가, 보조교사나 가정보육시설장은 43-44%정도가 고등학교 졸업자이다(Center for the child care workforce, 2007).

보육시설이 질적으로 우수한 곳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대부분의 연구들에서는 공통적인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sup>11)12)</sup>. 즉 낮은 교사 이직률, 낮은 교사 대 아동비율 및 교실 내 아동수가 적은

9) Whitebook, M., Bellm, D., Sakai, L., Kipnis, F., Voisin, I., & Young, M. (2004). Raising teacher education and training standards for universal preschool in California: Assessing the size of the task. Institute of Industrial Relations, Center for the Study of Child Care Employment. Berkeley, CA.

10) Center for the Study of Child Care Employment (2006), California early care and education workforce study: Licensed child care centers and family child care providers. San Francisco County Highlights, Institute of Industrial Relations, California Child Care Resource and Referral Network.

11) [http://www.ccw.org/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22&Itemid=51](http://www.ccw.org/index.php?option=com_content&task=view&id=22&Itemid=51)

12) 김명순(2009). 우수 보육교사 양성체계의 발전방안. 2009 한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 세미나, 17-38.

곳, 전문적인 교육을 많이 받은 교사 또는 교사의 교육수준이 높을 것, 포괄적 사회서비스와 좋은 양육환경이 제공되는 곳, 평가인증과(또는) 주기적으로 평가받은 곳이 그 특징으로 지적된다. 교사의 낮은 이직률이나 근무여건이 좋다는 것은 교사의 전문성 조건이 강화된다면 더 쉽게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진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학점은행제, 독학사, 사이버대학 등 대학학력 취득의 길이 다양하게 열려있다. 보육교사교육원을 졸업한 후 3급 자격취득의 경우, 학력을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즉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전공을 한 경우 보육교사교육원 1년의 교사 준비 과정을 거쳐서 3급을 취득하도록 할 수 있다. 이때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에는 3급과 분리하여 '보조교사자격'을 신설하고(유치원의 준교사 자격 처럼) 이들이 3급 또는 2급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경력 뿐 아니라 학사나 전문학사의 학력 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진 후에 승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김명순, 2009). 현재 대부분의 사교육시장인 학습지 방문교사들의 학력도 4년제 졸업자로 제한되고 있고, 관련 전공의 경우 2년제를 허락하는 수준이다. 국가수준의 보육교사자격이 사교육시장의 교사보다도 훨씬 더 낮은 학력으로 취득이 가능하다면, 보육의 질적 개선이나 전문성, 선진화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둘째, 현행 後 보육교사자격취득 제도과정에서 先 선발제도로의 전환과 논의 : 현 자격제도는 누가 어디서 어느 정도의 훈련을 받은 후에 교사 자격을 받을 것인가를 사전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과 자격 향상에 초점을 두기보다 자격발급에 의존하고 있을 수밖에 없으며,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교사정책을 펼수 없음**

교사 양성과정이 질적으로 우수할 경우, 곧 전문화된 우수한 교사가 키워질 것은 자명하다. 현행의 보육교사자격제도와 김은설박사가 제시한 개선안에도 교사양성과정의 질적 수준에 대한 담보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 물론 보육교사교육원의 평가부분에 대한 김의향국장의 발표는 일부 포함되기도 하였으나 2009년도의 4만 5천명에 달하는 신규 2급보육교사들이 어떤 과정에서 양성되었는가에 대한 답이 없이는 질적 전문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하여 남을 수 밖에 없다. 물론 2009년도에 표준교과개요를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나 그 내용을 어떤 강사가 어느 만큼 강의할 것인지 등에 대한 대답은 달리 얻을 길이 없다.

교사의 전문성이 확보되기 위해서 현행처럼 스스로 모든 과목을 다 들은 후에 자격을 신청하는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우선 2년제나 3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1학년을 마친 후에, 4년제 대학의 경우에는 2학년을 마친 후에 학생들이 교사자격을 해당 과사무실이나 대학사무실에 신청을 하도록 하는 선 선발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신청자격으로는 누적 평량 평균이 B학점 이상이거나 면접이나 교사신청이유를 보고 교수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이러한 자격은 추후에 좀 더 연구되어 구체화될 수 있다. 선 선발된 학생의 명단은 한국보육진흥원에 공문으로 매년 3월에 보내지게 되고, 한국보육진흥원은 이러한 학교에 대해서 실습을 포함한 필요한 교사양성과정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한번 정해진 신청자 명단은 자격취득자 명단보다 적은 수 일수 있으나, 추가되는 것은 어렵도록 한다.

先 선발제도는 학과나 학생 모두가 지원에서부터 교사 준비 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듣고 시작할 수 있어 마음의 준비 뿐 아니라 필요한 과목의 수강이나 실습에 대한 지도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교과목이 51학점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어떤 교과목이 더 개설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관리나 학생지도는 좀 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리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선 선발제도는 보육교사의 수급조절 및 관련 정책을 일관성 있게 펼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취업 후에도 교사의 근무여건을 향상하는데 주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보수교육과도 연관되어 일관된 내용의 정책을 결정하는데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보육교사 2급의 경우 2009년 현재 전국 309개 대학의 712개 학과에서 배출되었고, 한 학과에서 최대 794명까지 한해에 배출되었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었다<sup>13)</sup>. 한명의 보육교사를 배출하는 경우 수업의 내용이나 질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지만 700여명이 넘는 학생들을 한꺼번에 수업하는 것 역시 큰 문제를 예상할 수 있다. 김의향국장의 발표처럼 보육교사교육원에 대한 평가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점차적으로 전문대학이나 대학에 대해서도 보육교사자격 양성과정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본다. 유아교육과는 2007년 평가를 하여 개선요망에 대해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였다는 것은 좋은 사례라고 여겨진다. 좀 더 나아가 대학의 보육교사양성과정을 인증해주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전체 관련 대학의 보육교사양성과정에 대한 평가가 5-7년 주기로 이루어질 경우, 가칭 ‘보육교사양성과정질평가위원회’ 등을 두어서 현재 2급교사 배출 학과들의 질을 확보하는 부분을 제안하고자 한다.

미국 NCATE 평가기준으로는 얼마나 이 기간 동안 학생들이 배웠어야 할 전문적 지식의 핵심을 가르쳤는지, 전문적 기술 및 성향을 배우도록 하였는지, 다양한 영유아를 경험하면서 전문가로서 준비를 철저히 시켰는지, 전문적인 강사로 구성되었고 현장의 자격있는 전문가로부터 슈퍼비전을 받았는지, 전문가적 교사관점과 윤리 및 정체성 확립에 애썼는지 등의 기준으로 되어 있다<sup>14)</sup>. 이것은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임은 분명하다.

### 셋째, 보육교사와 시설장의 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기타 문제와 논의

- (1) 보육교사 2급 양성교과목 조정 및 이수학점 상향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 내용을 지지한다.
- (2) 그러나 새롭게 추가된 교과목 중 ‘특수아동 이해’나 ‘장애아 지도’가 유사한 과목명으로 보여, ‘특수 아동 이해’가 다문화 아동, 빈곤아, 발달적 문제아 등 다양한 배경의 영유아

13) 김의향(2009). 표준교과개요 및 표준보육실습지도 지침 개발방향. 보육인력의 전문성제고를 위한 표준화사업 제 1차 설명회 주제발표 자료. 보육자격관리사무국.

14) <http://www.naeyc.org/files/ncate/file/initiallicensure.pdf>

를 차별없이 존중하며 지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편견 지도’나 ‘다문화 교육’ 등 과목명 수정이 요구된다.

- (3) ‘영유아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의 과목은 학부에서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영유아 교재 연구 및 지도’라는 과목으로 수정하여 영유아를 위한 물리적 공간 구성, 놀잇감 및 교재교구 활용과 바람직한 지도법 등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과목에서 최근 활용되는 미디어와 컴퓨터 관련 내용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 (4) 새롭게 제안된 3급 교사의 승급 필요 경력과 더불어 2년제 학사 자격 취득(또는 사이버대학 학사)을 동시에 요구 할 것을 주장한다.
- (5) 보육실습기관을 평가인증보육시설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적극 동의할 뿐 아니라 실습생을 받는 시설장과 지도교사의 경우 2시간 정도의 **‘표준보육실습 지도지침(한국보육진흥원, 2010)’ 관련 강의를 받고 확인증이 있을 경우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한 시설에서 교사 한명이 지도할 수 있는 실습생의 수를 한 번에 몇 명, 일 년에 몇 개월간 이하로 규정하는 사항도 추가될 필요가 있다(김명순, 2009).
- (6) 보육업무 경력 직종 제한에 대한 개선안에 대해 모두 찬성하지만 한가지 추가할 사항은, 현재 드림스타트나 위스타트에서 저소득 취약계층 영유아를 위해 보육교사가 4-5년째 근무하고 있지만 경력이 인정되고 있지 않고 있다. **드림스타트나 위스타트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경우 동일 업무로 인정받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어려운 지역에서 저소득 영유아를 지도하고 있는 보육교사자격증을 가진 교사에게 형평성을 고려하여 경력을 인정해주어야 할 것이다.
- (7) 선임교사제의 신설과 이들을 위한 국가자격시험의 도입은 교사의 승진이라는 점에서 교사 사기를 높이고 40인 이상 시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게 되어 바람직하리라 여겨진다. 단 선임교사를 거친 경우, 시설장이 되고자 할 때, 시설장 사전교육 중 몇 과목을 면제해 주는 것도 형평성에 맞는다고 여겨진다.
- (8) 교사의 호봉은 학력과 경력에 따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김은설박사의 제안에 대해 찬성하되, 한가지 추가한다면 **석사학위를 받았을 경우 1호봉을 더 올려서 차등을 둔다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 (9) 시설장의 경우 사전 교육의 도입은 적극 찬성한다. 단 사전교육은 반드시 중앙에서 이루어져 강의내용이나 수준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장해야 하며, 만일 지방에서 이루어질 경우 사전 교육이 끝난 후 평가시험은 반드시 **중앙에서 난이도를 고려하여 출제한 문제로 시험을 치루도록 하여** 사전교육수준의 지역적 편차를 배제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10) 시설장은 보육의 전문성에 가장 핵심이다. 시설장은 시설의 운영 뿐 아니라 교사, 영유아, 그리고 부모 및 지역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시설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2급, 1급을 거쳐서 (가정, 일반)시설장 사전교육을 받기 전까지 학력의 최소 요건으로서 2년제 학사 이상을 취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11) 시설장 자격에서 보육업무 경력이 없는 타 자격소지자나 간호사 자격의 영아전담 시설장 등의 항목 삭제에 대해 적극 찬성 한다.
- (12) 보육교사교육원의 평가는 국가 차원인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보육교사교육원의 평가가 계획되기 이전에 보육교사교육원에 대한 향후 방향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하고, 그 후에 평가 방법, 평가지표나 운영절차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 진학률이 80%이상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도달하기 어려운 학력을 이미 5명 중 4명이 소지하고 있는데, ‘전문성, 교사, 객관적 평가, 수월성’ 등 그럴싸한 용어로 전체를 격렬히 논하다가,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포함해야만 보육교사 수급이 원활하고 놓여온 보육현실에서는 3급 교사의 폐지는 불가능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격이다.

지난 몇 개월 전 본인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수년간 영국 보육계의 거장인 한 학자가 ‘영국은 전체 대학졸업자의 하위 10%가 교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영국)을 보려고 하지 말고, 전체 대학졸업자 중 상위 5%가 교사가 되는 나라(핀란드, 싱가포르, 뉴질랜드)를 본보기로 삼으면 좋겠다’는 충고가 무척 부러웠던 적이 있다. 이 말은 교사자격과 질적 수준을 모두 함축해 주고 있다. 자격제도의 첫걸음은 3급교사의 폐지와 개선안이 먼저 도출되어야 하며, 보육교사교육원에 대한 평가는 이것과는 별개의 다른 논의 거리이다.

## "보육 선진화를 위한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방안 토론회" 토론문

백 선 희 (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보육교사와 보육시설장 자격 제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보는 오늘의 이 자리는 의미 있는 장이 될 것이다. 유아교육과 비교할 때 보육사업은 다학문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영역이다. 어쩔 수 없는 다학문적 접근이 아니라 사회적 필요에 의한 다학문적 접근이다. 그 보육서비스를 담당하는 인력에 대한 논의도 보육서비스의 성격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자격제도에 대한 검토는 합리적이고 타당하여야 한다.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의 필요성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발표자들이 제안하는 각각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다. 주요한 몇 가지에 대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 1. '보육제도 자격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토론문

#### □ 필자의 문제 제기

- ① 전공무관 교사 양성체계, ② 고졸이상 자격부여 제도가 문제라고 제기함.

#### □ 개선방안에 대하여

##### • 교과목 및 이수학점

- 제안: 12과목, 35학점 -> 17과목 51학점(유아교육의 경우 전공 50학점)은 내용상의 측면에서 설득력 약함.

- 이수과목: 개선안은 대개 양적 확대에 초점을 둔 것으로, 내용적 측면에서 학점을 늘리고자 하는 타당성을 찾기 어려움(일부 과목 제외: 신규로 제안한 영유아 사회정서 지도).

. 현, 아동발달 -> 개선안, 영아발달, 유아발달

. 현, 특수아동지도 -> 개선안, 특수아동이해, 장애아지도

. 현, 아동음악과 동작 -> 개선안, 아동음악, 아동동작

. 현, 아동수과학 지도 -> 개선안, 아동 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 현, 선택과목 보육교사론 -> 개선안, 필수과목 보육교사론

- 보육실습 강화 2학점 -> 3학점: 바람직함.

- 아동복지론과 보육학개론의 중복: 아동복지론의 한 부분으로 보육사업에 대해 다루게 되므로, 일부 중복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음. 그러나 강좌의 목적과 전체적 내용으로 보아 아동복지론은 보육학개론과 구별되는 독자적 영역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육사업을 위해 아동복지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3급 보육교사 승급 필요경력 요건 강화

- 발표자는 기본적 문제제기는 ‘고졸이상 자격부여 제도가 문제’라는 것임. 필자의 이러한 문제제기라면 승급 필요 경력 강화를 제안할 것이 아니라, 3급의 폐지를 제안해야 한다고 생각함. 같은 맥락에서, 3급 보육교사 승급 필요경력에 대한 발표자의 제안은 보육교사 3급의 필요성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여짐. 발표자의 명확한 입장과 일관된 주장 필요함.

- 실습기관

- 평가인증보육시설로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 덧붙여 실습 수퍼비전을 줄 자격을 갖춘 보육교사가 있는 곳으로 제한하여야 함(예, 보육교사 1급, 실무경력 3년 이상의 수퍼바이저 존재)

- 보육업무 경력 직종 제한

- 취사부, 사무원, 운전사 경력은 ‘보육업무’가 아니므로 당연히 보육업무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만약 현재까지 취사부, 사무원, 운전사 경력이 인정되었다면 그것은 법을 잘못 적용한 것임. 보육업무와 보육시설 근무는 다르기 때문임.

- 선임교사제

- ‘보육교사의 장기 근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라면 선임교사제도는 필요하지 않음. 현재 발표자의 제안대로라면 선임교사는 보육교사 1급 위의 또 하나의 보육교사 자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육교사 자격제도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
- 만약 선임보육교사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조직관리의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는 것임.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 보육정책이나 향후 몇 년을 전망하였을 때 ‘선임보육교사’와 연관된 별도의 직제를 두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됨.

## 2. ‘보육시설장 자격제도 개선 방안 및 보육교사교육원 평가 방향’에 관한 토론문

### □ 보육시설장 자격취득 경력 인정 범위 제한

- 현재의 제안은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음. 보육교사와 보육시설장의 역할과 기능에는 차이가 있음.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장애영유아생활시설, 특수학교교원, 간호사 등은 어떠한 측면에서는 일반적인 보육교사가 갖지 못하는 장점과 경험이 있음(예, 영아전담보육시설, 장애아전담보육시설 등). 영유아의 보호/교육과 관련이 있는 직종으로, 자격기준을 지나치게 획일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음.

### □ 가정보육시설장 자격기준 개선

- 자격기준 강화에는 동의함. 그러나 현재의 보육교사 1급 + 1년 실무경력 + 사전교육은 지나치게 강화한 것임. 발표자는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 이후 5년의 보육업무 경력이 필요함’(보육교사 3급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는 6년임, 교육기간 포함 7년차 가정시설장 가능)이라고 제안하면서 가정보육시설 정원을 채우지 못하니 가정보육시

설장 자격을 강화하여 신규 가정보육시설 진입을 어렵게 하려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보육시설장 자격은, 사법고시, 행정고시처럼 수요를 고려해 공급량을 조정하는 제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지나친 자격 강화는 신규진입 제한, 기득권층 보호라는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음.

□ 일반보육시설장 자격기준 개선

- 사회복지사 1급, 간호사 부분에 대해 삭제한 것은 재고되어야 함. 이유는 상기에서 밝힌 바와 같음.

□ 교육원 평가

- 첫 번째 발표자(육아정책연구원)는 ‘고졸이상 자격부여 제도’ 즉 보육교사 3급의 존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함. 두 번째 발표자(한국보육진흥원)는 보육교사 3급 폐지는 어렵다고 주장함. 첫 번째 발표자도 현실적으로 3급의 폐지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함. 두 발표자 모두, ‘당장’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 어쩔 수 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사회적으로 필요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분명한 견해를 제시해 주었으면 함. 교육원의 문제는 이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
- 평가기관 주제: 발표자는 국가기관을 가장 선호함. 적절함.
- 평가결과 활용방안: 발표자의 제안은 부재함. 선행연구에서 밝힌 제안들의 일부는 부적절하다고 봄. 발표자의 생각은 어떤지가 궁금함.



## 보육인력 전문화 방안 토론편

### 이 미 정 (여주대학 보육과 교수)

#### 1. 유치원자격증 75점이하 자격증 취득 불가능 조항: 보육교사 자격증도 학점하한선 필요

이 조항은 2008학년부터 신설된 것이 아니라, 2008년 이전에는 전공 및 교직과목 각각 B학점(80점) 이상인 자에 한해서만 자격증 부여하던 조항을 수정한 것이다. 이 조항 때문에 유아교육과에서는 가능한 입학생 전원에게 유치원자격증을 주기 위하여 대부분의 교과목에서 b학점 이상 주고 있어, 유아교육과의 학점인플레 현상의 심각성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유아교육과 졸업자들의 학점은 대부분 b학점 이상이고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과 출신 중 유치원자격증 미취득자는 극단적인 성적최하위자인데, 문제는 이들도 보육교사 자격증은 아무런 문제없이 취득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육교사 자격증은 학점 하한선 제한이 없기 때문에 성적 최하위자도 모두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결국 보육교사의 경우 취득학점 하한선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 보육교사 자격증의 권위와 전문성을 크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경우도 자격증취득에 필요한 최소학점 기준(예, 전학년 평균성적 80점 이상)을 제시하여 수준 이하의 학생의 보육교사 진입을 초기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 2. 보육교사 최저 학력이 '고졸'로 평가되어 보육의 전문성을 크게 훼손함

보육교사교육훈련원 자격기준이 고졸이상이기 때문에 전체 보육교사의 최저학력은 고졸로 평가된다. 따라서 현재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고졸여성'의 평균인건비를 기준으로 상정되어 단순노무직의 인건비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이에 비해 현재 유치원교사의 최저학력은 전문대졸이므로 '전문대졸 여성'의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다. 이러한 보육교사 및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책정의 차이가 표준보육단가와 유치원 표준교육비 단가에 영향을 주어서 표준보육비 단가와 표준유치원교육비 단가의 격차를 만들어 내는 중요 요인이 되고 있다. 낮은 표준보육단가는 최종적으로 보육의 질과 보육환경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더군다나 현재 유아교육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아교육선진화방안에 따르면, 2012년부터 전국의 유아교육과는 모두 4년제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따라서 표준보육비 단가와 유아교육비단가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은 자명하다.

그러므로 보육교사 최저학력을 최소한 '전문대졸 이상'으로까지 상향조정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를 위해서는 보육교사교육원의 역할전환(예, 전문 보수교육 전담기관)이나, 보육교사교육원 입학자격의 상향조정('전문대졸이상인 자'로 최적학력수준 상향조정) 하는 개혁이 필수불가결한 일이다.

### 3. 학과제로 제한하여 보육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 있음

보육교사 전문성강화를 위해 자격취득 방법을 학점이수제에서 학과제로 변경해야 한다. 현재는 보육관련 교과목과 학점만 이수하면 되기 때문에, 특히 그 필요 학점이 단지 35학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격취득이 너무 쉬워서 매년 보육교사를 배출하는 학과의 수는 무려 700개나 된다. 학과제로 제한해야하는 당위성은 늘 제시되어왔고, 실제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기 전에 자격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잠시 몇 년 동안 보육교사자격증도 보육과를 중심으로 하는 관련학과 중심제도로 운영되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던 것이 영유아보육법의 전문개정이 이루어지던 2005년 당시 4년제 대학의 학생모집 방법이 학과제에서 학부제로 변경되면서 전국 보육관련 4년제 전공자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는 제도가 되자, 학점이수제도로 변경된 것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의 4년제 대학 신입생 선발이 학부제에서 학과제로 변경된 상태이므로, 보육교사 자격취득도 관련학과 중심으로 제한하는 것이 전문성강화에 시급한 요건이다. 즉, 보육학과, 아동학과, 유아교육학과, 아동복지학과 등의 핵심학과 그룹을 형성하여 자격취득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 4. 보육교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이수교과목의 상향조정은 우선 환영하나 이후 보다 강화할 필요 있음

보육교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이수교과목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 현재의 필요이수교과목은 2004년 법을 개정하면서 많은 이익집단들이 합의한 최소한의 교과목만을 포함한 것이다. 종전까지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과목이 더욱 느슨하였기 때문에 보육과 전혀 관계없는 수많은 학과에서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교과목을 필요이수과목에 포함시키고자 시도하였으나 많은 이익집단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빠른 시간 안에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을 갖고 1차 협의안의 성격을 지닌 채 현재의 교과목수인 12과목 35학점으로 잠정 합의되었었다. 그러나 곧 다시 상향조정될 계획이었던 이수교과목은 전혀 수정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렀고, 그 사이에 유사직종인 유치원교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필요한 교과목은 대폭 상향조정이 완료된 상태이다. 특히 유치원교사 자격증은 보육교사 취득에 필요한 학점의 두배 이상으로까지 상향조정되었다. 이제 보육교사는 가장 작은 수의 교과목이수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 되었다. 게다가 비전공자라할지라도 쉽게 자격증을 따서 보육의 핵심 현장으로 진입하는데 아무런 여과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직업현장이다. 보육의 전문성확보는커녕 현장에서의 전공자 보호 장벽도 없는 유일한 자격증이다. 유치원 현장이나 사회복지 전문현장은 타학과 졸업생이 결코 쉽게 핵심인력이 될 수 없는 구조임을 주지해야만 한다. 사회복지사2급도 학점제로 취득가능하나 보육교사보다 취득학점이 높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회복지 업무에 투입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려면 사회복지사 1급자격이 필요하고 이는 국가시험제도이므로, 사회복지 업무도 진입장벽이 높은 것이다. 따라서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보육의 질을 고양하기 위해 필요 이수교과목의 대폭 상향조정을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5. 이수교과목의 상향조정 시 교직과목을 추가하여야 하는 문제

이수교과목의 상향조정 시 교직과목을 추가해야 하는지 아닌지의 문제는 보다 원론적인 보육학의 정체성 문제와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된다. 보육학의 모학문이 교육학인지 가정학인지 사회복지학인지, 아니면 이 모든 학문에 뿌리를 둔 새로운 파생 실천학문인지에 대한 숙고로부터 전공 이외에 어떤 과목이 더 추가되어야 할 것인지를 고찰이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학문적 논의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되며, 보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을 것이다.

교직과목 추가문제는 보육관련학과 교수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사료된다. 보육관련학과 교수들의 학문적 배경이 매우 다양하고 보육과 아동학 전공자가 오히려 소수인 상황이므로 설문에 의한 결과는 오히려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보육 및 아동학 전공자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 집단의 심도 있는 논의와 숙고과정을 통해 결정이 존중되어야 하고 반드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결정될 문제라고 본다.

### 6. 보육실습교과목

실습기관을 보육시설 평가인증시설로 제한한 점, 보육시설에서 실습한 경우만 인정(종일제 유치원 제외)한 점 등은 매우 바람직한 개선안이라고 평가된다.

### 7. 보육시설장 자격취득 전 사전교육 의무화방안 환영하나, 이수시간 확대는 추후 계속되어야 함

개정방안의 사전교육시간은 80시간으로 현재의 두 배이지만 유치원원장 자격연수시간이 360시간인 점에 비추어 보면 추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시설장 교육기간 동안 대체 교사 지원의 실질적 지원운영 방안이 함께 고려되면서 병행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 8. 보육시설장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인정범위 제한 환영하나, 유치원경력 인정 여부는 인접 학문간 상호호혜적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려될 필요 있음

: ‘보육업무’로 경력인정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취사부, 사무원 등의 비전문인력을 제한하게 된 것은 늦었지만 중요한 개정방안으로 환영한다. 특히 초등교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공무원에 관한 조항의 삭제는 매우 적절한 개정안으로서 보육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환영할만한 방안이다.

단,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교사로 근무한 경력’은 고려의 대상이 되는 항목이다. 보육과 유아교육의 협력의 차원에서 이런 조항이 남겨진 것이라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서 시설장, 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유치원 원장 자격증 취득에 가능한 조항인지 자문해보아야 한다. 유치원에서는 결코 전혀 인정되지 않는 조항이 보육시설에서는 별 저항 없이 인정되는 이유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고, 이에 대한 납득 가능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상호호혜적인 맥락에서의 조항이 아니라면,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9. <표9>, <표10>의 시설장 자격개선방안에 “+ 시설장 사전교육’ 조항이 함께 들어야 함**

<표8>과 같은 맥락으로, 유치원 원장 및 유치원 정교사1급 자격증 소지자도 시설장 사전교육을 받는 것은 필수사항이 되어야 한다(아마도, <표9>, <표10> 기록 시 누락된 것으로 보여짐). 두 기관이 상호 파트너십을 가진다할지라도 보육시설과 유치원은 서로 다른 기관이므로 보육시설로 근무지를 옮길 때 반드시 시설장 사전교육을 거쳐야 한다.

**10. 보육교사 급수에 따라 시설장 자격취득까지 소요되는 기간 조정에 대해 찬성하나, 이 조항도 추후 점진적으로 현행보다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음**

특히 보육교사 3급 자격 취득요건이 최소한 전문대졸 이상 등으로 상향조정되지 않는다면 보육교사 3급의 승급과 시설장 자격취득은 진입장벽을 더 높일 필요 있음. 현행 보육교사 3급제도 때문에 보육교사의 학력수준이 고졸로 평가되어 인건비 산정과 표준 보육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한다면 보육교사3급에 대한 근본적인 일대 개혁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함.

**11. 보육교사 교육원 평가 자체는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교육원의 평가가 보육현장 전문성 강화에 그다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음**

보육교사교육원도 보육관련 기관이므로 분명히 보육을 함께 걱정하는 중요한 우리의 기관임에 틀림없다. 이런 의미에서 본 토론자는 보육교사교육원을 폄하하거나 비난할 의사가 조금도 없으며, 단지 보다 큰 맥락에서 보육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함께 윈-윈하기 위한 마음으로 의견을 제시함을 밝혀두며, 상호 열린 마음으로 논의가 되기를 희망한다.

큰 틀에서 볼 때, 보육의 발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지금 보육교사교육원의 보다 구조적인 과감한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숙고를 요구한다. 현재 상황에서 교육원 평가 방안은 근본대책이 아니라고 보며, ‘교육원의 역할 변화’, ‘보육교사교육원 입학자격의 ‘전문대졸 이상’으로의 상향조정’ 등의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요구된다.

발제자는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특히 교사모집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보육교사교육원의 존립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교사수급 문제의 근본 원인은 낮은 인건비와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으므로 교육원이 현재처럼 존재해도 교사수급은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교사의 자격을 높이고 자격취득을 강화하고 인건비를 상향조정한다면 근본적인 교사수급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본다. 물론 인건비 문제의 해결은 보다 복합적인 사안이고, 보육료 자율화를 포함한 다각적인 논의가 요구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교육원의 근본적인 과감한 변화가 요구되며, 이러한 변화는 보육의 전문성 강화뿐만 아니라 오히려 교육원 및 교육원 종사자의 위상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12.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 학점은행제 등에서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보육자격제도에 대한 개선이 누락됨**

한꺼번에 모두 개선하기 어려워 실현 가능한 부분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이해되지만, 전문성 문제와 연계하여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자격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

### 지 성 에 (중앙대학교 유아교육학과 교수)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과 더불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및 보육에 대한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는 보편적 보육개념의 도입, 정부의 예산지원확대, 보육시설 설치의 인가제도의 환원,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도입,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장 자격제도 도입 등의 관리 감독 강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보육의 질 개선의 필요성과 역점을 두어야 할 측면은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장 전문성 강화임을 일관성 있게 연구 및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육교사와 보육시설장의 전문성의 질은 양질의 보육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보육교사와 보육시설장은 법적인 자격요건 뿐 만 아니라 시설장으로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는 보육자격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자격제도는 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매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표자이신 김의향국장님과 김은설연구원님은 그동안 보육교사와 보육시설장 자격제도와 관련된 핵심 이슈들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던 연구 및 전문가 의견 또한 현황분석 등을 반영하여 양질의 보육교사와 보육시설장을 양성할 수 있는 보육자격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본 토론자는 발표된 ‘보육교사 자격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타당성, 근거 그리고 실효성을 타진해 보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첫째, 발표자께서는 보육교사자격제도 개선방안으로 보육교사 2급 양성교과목 조정 및 이수학점을 12과목 35학점에서 17과목 51학점으로 상향 조절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을 위한 과목과 학점 상향 조절은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영유아 보육의 직무의 전문성을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 더 많은 교과목과 학점으로 상향 조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육교사2급 양성교육과정 조정의 기본 방향을 ‘교사’로서의 인성과 자질 함양, 표준보육과정 각 영역에 대한 ‘교육적 지도’ 역량의 제고, 영아기에 대한 이해와 확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 방향에 입각하여 ‘보육교사론’ 과목을 필수 기초교과로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교직소양으로 보육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직한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기존의 양성교육과정 ‘영역’을 우리나라의 사회 문제적 변화에 적합하도록 또한 교육과정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영역이 되도록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은 보육필수(영유아 발달 포함) -> 발달 및 지도 -> 영유아교육(지도 : 교육의 차이) -> 건강 영양 및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 협력(보육운영에서의 지역사회 자원 활용 관련 교과목 및 다문화교육관련 교과목 부제) -> 보육실습(3학

점)의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몇 개 영역은 영역 명칭뿐 만 아니라 내용별 로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육 필수’ 영역이 있다면 다른 영역은 필수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이 영역은 특히 보육교사로서의 보육철학과 신념 그리고 사명을 강조하는 영역으로 간 주해야 하고 그와 관련된 교과목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 ‘보육 필수’ 영역에 영 아 및 유아 발달을 포함하고 ‘발달 및 지도’영역에는 왜 포함하지 않았는지 질문을 해 봅니다.

‘발달 및 지도’ 영역은 ‘영유아교육’과 부합되는 영역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달 및 지도’는 영유아 발달, 관찰, 평가, 생활 및 행동지도 등을 포함하는 ‘발달, 평가 및 생활지도’로 바꾸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추가 제시한 ‘영유아사회 정서지도’는 ‘발달 및 지도’에 포함될 수도 있으며 인지발달과 관련하여서도 ‘아동수학 교육’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달 및 지도’영역은 발달 특성 이해, 관찰 및 평 가, 그리고 생활 및 행동지도 부분을 강조하는 영역으로 해야 할 것 입니다.

표준보육교육과정 각 영역에 대한 교육적 지도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영유아교육’영 역을 강화하여 선택가능 과목을 다양화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영유아 사회정서지 도’를 추가하였으나, 선택 가능 과목을 다양하게 한 것보다는 대부분 기존의 교과목을 분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아동음악과 동작’과 ‘아동음악’과 ‘아동동 작’으로 또한 ‘아동 수 과학지도’를 ‘아동수학지도’ 그리고 ‘아동과학지도’로 분리하여 구 성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영유아를 보육하는데 요구되는 교과목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 여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과목 추가를 통해 재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 영양 및 안전’ 영역은 보육운영에 기본이 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양성교육과정 조정의 기본 방향을 영아기에 대한 이해와 확장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유아발달과 구분 하여 ‘영아발달’을 독립 교과목으로 ‘보육필수영역’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유아 뿐 아니라 영아(예; 수유, 이유, 질병 등등) 보육에서의 건강 영양 안 전은 매우 중요한 부분임으로 보다 다양한 그리고 영아와 유아에 적합한 교과목을 제공 하여 건강, 영양, 안전에 관한 기본 지식을 갖추도록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외에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사회가 도래되었음을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 제 보육현장에서 다문화가정 출신 영유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이해를 위한 교과목과 영유아 다문화교육 교과목을 추가시킬 필요가 있다 고 생각됩니다.

셋째, 영유아보육법과 관련하여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의 교과목 명칭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영아, 유아, 아동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 육시설에서는 0세부터 만5세 영유아들을 보육하고 있으며, 보육교사 양성교육과정은 0 세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들의 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교과목 명칭 앞에 붙여진 ‘아동’을 ‘영유아’로 바꾸는 것을 고려 해볼 필요가 있으며, 새로 추가한 교과목인 ‘영유아 사회정서지도’를 대조해 볼 수도 있 을 것입니다.

넷째, 3급 보육교사 승급 기간이 2급 보육교사 승급 기간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많은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발표자께서 제시한 1년의 보육업무를 2년 보육업무로 상향 조정 한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그러나 3급 보육교사 보육업무는 ‘보육업무 경력 직종 제한’에 제시된 내용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에서 보육시설장 또는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또는 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정보센터장 또는 보육전문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보육업무 경력 인정 직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3급 보육교사가 2년동안 보육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2급 보육교사 자격을 주는 것인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또한 3급에서 2급 보육교사로의 자격에 있어서 보육업무이기는 하지만 현장경험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렇다면 보육정보센터에서 보육전문요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섯째, 발표자께서는 보육실습 기준을 질적수준이 보장된 시설에서의 실습 인정과 보육시설의 업무와 환경에 익숙할 수 있는 실습기회가 될 수 있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평가인증보육시설’을 실습기관으로 인정하고 종일반 운영 유치원은 영아와 종일제 보육과정 운영에서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습니다. 특히 실습기관은 15인 이상의 평가인증보육시설로 제한하였습니다. 발표자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보육실습은 실천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은 곳입니다. 평가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15인 이상이라면 일반적으로 가정보육시설로 영아대상 보육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 전반적인 보육 실무를 익히기에 적합한 것인지 제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말해 보육실습은 가능한 다각적인 측면에서, 적어도 ‘영아를 포함한 종일제 운영’ 등과 관련된 보육실습을 필수적으로 경험해야 하는데 평가인증을 통과하였다도 15인 이상이라면 실습기관 선정 근거가 되는지를 제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보육교사 자격을 위한 보육실습은 많은 제한점이 있습니다. 일정한 ‘과’단위에서 양성하는 체계가 아니라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보육실습을 하면 자격증을 받는데, 실습관리를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달동안의 보육실습은 예비보육교사가 앞으로 보육현장에서 생활하는데 있어 모델과 기초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신뢰성과 타당성이 높은 실습기관도 필요하지만 실습지도 및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게 요구됨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 모형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야간대학’ 등의 경우에는 실습을 2회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도록 예외로 개방한다면, 지금으로서는 다양한 상황의 보육교사 사전교육기관 예를 들어, 사이버 대학 등도 예외에 대한 인정 요구가 대두됨으로 예외 없는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여섯째, 발표자께서는 중장기 추진 검토사항으로 ‘선임교사’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발표자가 주장한 선임교사자격 취득은 보육시설장 자격 취득과 겹치고 있습니다. 물론 선임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자격시험제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보육교사 3급부터 보육시설장자격 까지 연계적인 체제를 먼저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예측할 수도 없는 많은 수의 보육교사들을 양성하고 배출하

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도 많은 수의 보육교사 자격증이 장롱 속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에서는 보육시설장 자격을 취득한 보육교사가 여러 명인 시설도 많은 현 상황을 볼 때 보육교사와 보육시설장의 자격을 너무 쉽게 취득할 수 있어 남발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임교사’제를 도입하기 전에 이에 대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있는 자격제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양질의 보육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자격제도가 구축되길 바랍니다.

##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방안」에 대한 토론

강 무 섭 (강남대학교 보육교사교육원 원장)

### 1. 보육교사 자격제도 개선 방안(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부 연구위원)

발표자는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c)을 활용한 연구를 통하여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탐색하고, 그 결론으로 보육교사 자격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보육정책 환경에 부응하는 시의적절한 주제의 연구라고 생각되고, 주요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에 대한 보육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일치를 유도하기 위한 접근방법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였다는 것도 참신성이 돋보이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먼저 연구의 이론적인 배경으로서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보육교사의 전문성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 즉 보육이란 ‘보호’와 ‘교육’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선진국의 경우를 보아도 보호보다 교육의 의미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 것 같다. 그래서 보육교사에게도 유치원이나 초·중등 교사 못지않게 아니면 그보다 더 교사로서의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는 전문직으로서 그에 합당한 교양과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핵심적인 역량을 갖추어야 하고, 그러한 능력과 자질을 사회나 전문직세계에서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발표자는 이러한 관점에서 보육교사의 양성과정과 자격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다. 우선 보육교사 3급의 경우 1년 단기교육으로 이수하는 교과목수나 이수학점은 2급 자격과정보다 훨씬 많지만 교양교육의 측면에서 요구되는 자질이나 역량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그리고 보육과 무관한 학과에서도 보육관련 전공 12과목 35학점만 이수하면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하는데 이 경우 보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이론이나 실제적인 자질을 갖추기에는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마치 과거 초·중등학교 교사직이 인기가 없을 때 타 전공 학생들이 ‘취업하다 않되면 교사나 하지’하고 교직과정을 이수했던 것과 비슷한 양상과 같이 보육교사 자격증을 걸다리로 이수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나 차이는 보육교사는 보육관련 전공만 이수하는 반면 초·중등교사의 경우는 교직과정을 이수한다는 것이다. 자격승급도 유치원교사나 사회복지사 자격 승급에 비교하여 그 기간이 짧거나 승급이 용이하다는 지적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다.

발표자는 델파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육교사 자격제도의 구체적인 개선을 제안하고 있는데 우선 보육교사 2급 양성과정의 이수 교과목수를 늘리고 학점을 상향조정하는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토론자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는 아니지만 세부 개선안에서는 일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다. 보육을 보호와 교육의 기능으로 보면 현행 양성과정에서 교육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측면에서 ‘보육교사론’이나 ‘영유아사회정서지도’ 등의 교과목을 추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영유아발달’을 ‘영아발달’과 유아발달’로 분리하여 심화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영유아발달’을 연속성있게 하나의 과목 속에서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현행대로 ‘영유아발달’을 한 과목으로 두

고, 필수과정에 보육교사의 교직과목에 해당되는 '영유아교수방법(론)'을 선택이 아닌 필수과목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지만 초·중등단계의 특수교사와 같이 유치원교사나 보육교사에서도 특수영유아를 지도하는 특수교사를 별도로 양성하고 특수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는 없는지 의문을 제기해 본다.

3급 보육교사의 승급 필요경력 요건을 강화하는 부분도 동의한다. 혹자에 따라 교육 경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현장경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어느 쪽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직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보육교사는 전문직이기 때문에 전문직에 부합하는 교육과정과 교육기간이 필요하다. 3급 보육교사의 경우 교육과정(25개 과목 60학점)은 전문대학 과정의 75% 수준을 이수하지만 이를 1년의 속성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전문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다. 자격 승급 기간과 요건을 전체적으로 논의해야 하지만 3급 보육교사만 놓고 보면 양성과정을 현행 1년 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 1년 현장 보육업무와 승급교육으로 2급으로 승급하는 것은 다소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2년 보육업무와 승급교육으로 승급을 하되 승급교육은 2급에서 1급 그리고 1급에서 시설장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보다 체계적·전문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보육실습 기준에서 실습기관은 15명 이상의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로 제한하고 동일제 유치원을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지역적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이 연간 실습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 같다.

보육업무 근무경력 환산에서 직종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의 보육시설장이나 보육교사로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나 보육정보센터장이나 보육전문인력의 경우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일정기간(1년 이상 등)의 보육교사 근무경력이 있을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보육정보센터장이나 보육전문요원의 경력만 가지고 1급 교사가 된다던지 보육시설장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보육업무 현장 경력을 중요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타 중장기 추진 사항으로 제안 한 선임교사제 도입과 자격급수에 따른 호봉의 차등 책정에 대한 토론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다. 선임교사제의 도입은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왜 선임교사제가 필요하고, 보육시설에서 선임교사가 하는 기능과 역할은 다른 교사와 어떻게 차별되며, 선임교사에 대한 처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가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 같다. 선임교사를 국가자격시험으로 하는 것은 또 다른 번거로움과 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시험보다는 선임교사가 되기 위한 교육요건이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 같다.

자격급수에 따른 호봉의 차등 책정은 자격과 호봉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즉 급수에 관계없이 단일 호봉제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급수에 따른 호봉제를 택할 것인지에 따라 다르다. 보육교사의 경우 이미 양성과정에 따라 자격의 급수가 부여되고, 이 자격에 따라 임금이 책정되고 있기 때문에 발표자가 제안한 대로 자격급수와 교육연한 등을 고려하여 호봉을 부여하면 2급 경우는 이중의 혜택이 주어져 3급과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동일 2급인 경우 전문대 2급 자격자가 1호봉이면 4년제 대졸 2급 자격자는 3호봉을 부여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본다.

## 2. 보육시설장 자격제도 개선방안 및 보육교사교육원 평가방향(김의향,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국장)

발표자의 주제내용에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2개의 하위 주제(보육시설장 자격문제와 보육교사교육원 평가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어 두 편의 페이지를 토론하는 것 같았다. 물론 발표자도 주최 측의 요구에 부응하여 준비한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발표자는 보육시설장 자격제도 개성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장의 역할과 그 역할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적인 자질과 역량 등을 논의하고, 보육시설장 자격제도가 변천해온 과정을 살펴본 다음 현행 보육시설장 자격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대부분 동의하는 부분이다.

우선 보육시설장 자격제도의 문제를 4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즉 첫째는 공급 과잉 문제로서 이 문제는 보육시설장 자격을 너무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데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둘째는 공급과잉과도 연계되는 문제이지만 보육시설장 자격취득에 요구되는 경력조건이 너무 짧은 것이다. 즉, 유치원 원장의 경우 최소 9년 이상의 경력을 요하지만 보육시설장의 경우 가정보육시설장의 경우 3년 그리고 일반보육시설장의 경우도 5년이면 가능하다. 셋째는 자격취득을 위한 사전교육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육시설장이 될 수 있는 길이 너무 다양하여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먼저 사전교육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사전교육 도입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교육시간 80시간은 더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보육시설장 자격의 과잉공급 문제도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성 문제이다. 보육시설장은 가정보육이던 아니면 일반보육시설이던 시설장(場)이라는 하나의 조직을 운영하는 관리자이자 행정가이면 리더십 측면에서 보면 경영을 책임지는 CEO이다. 보육교사와는 다른 자질과 역량이 요구된다. 단순히 경력을 쌓으면 길러질 수 있는 자질과 역량도 있지만 리더십 역량이나 관리능력은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보육시설장의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이 사전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사전 교육프로그램은 유치원 원장이 360시간이라면 이에 준하거나 이보다 좀 적은 200-240시간 정도는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보육시설장 자격 취득을 위한 경력인정 범위를 현행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하되, 보육교사 이외의 경력(취사부, 사무원, 운전자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여기에서 보육교사자격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이나 보육전문요원 경력의 경우 최소한 일정기간(1년 이상)의 보육교사 경력이 있을 때 함께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보육시설장의 경우 보육교사로서의 현장경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셋째, 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안에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우선 가정보육시설장의 경우 1급 보육교사가 1년 경력에 사전교육을 이수하면 자격 요건이 되는 것을 경력 2년으로 상향조정하여 2급 보육교사가 가정보육시설장이 되기 위해서는 5년이 소요되도록 할 것을 제

안한다. 또한 일반보육시설장의 경우 보육교사 1급 자격 취득후 2년의 보육경력을 3년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을 동의하고, 개선안에서 사전교육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초등교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공무원 등 보육교사경력이 없는 타 자격자에게 보육시설장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두 번째 주제인 보육교사교육원의 평가에 대한 토론이다. 양질의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질 관리 차원에서 보육교사교육원 평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문제는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만 남아 있다. 발표자는 보육교사교육원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평가결과 활용 문제와 누가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만 논의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부분이 가장 연관성이 있는 문제이다.

먼저 평가를 논의하기 전에 보육교사교육원의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단순한 교육훈련시설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교육과학기술부가 관장하고 있는 교원양성기관과 똑같이 보육교사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 볼 것인지가 규명되어야 한다. 물론 국가차원의 교사자격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독점하고 있어 보건복지부가 발급하는 보육교사자격을 국가교사자격으로 볼 수 있겠느냐 하는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보육교사교육원은 후자의 성격임에는 틀림이 없다. 즉, 보육교사교육원은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라 전문교육기관이다. 따라서 교육원 평가도 유치원이나 초·중등학교 교사양성기관 평가와 같은 시각과 방식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육교사교육원 평가 결과의 1차적인 활용처는 보건복지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보육교사교육원을 어떻게 육성·관리하고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귀중한 자료가 되어야 한다. 둘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똑 같은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각 교육원이 자체적으로 교육원의 질 관리와 교육수요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즉 교육원 수료 보육교사를 채용하는 시설장들에게 교육원 수료생의 질을 가늠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보육교사교육원의 평가결과는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목적에 더 큰 비중을 둔다면 평가의 주관은 관주도가 되어야 하고, 셋째와 넷째 목적에 더 큰 비중을 둔다면 평가의 주관은 민간주도가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평가는 상기의 모든 목적에 두루 활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반관반민의 형태를 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는 고등교육법에서 평가인정을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인정해주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직접 평가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하는 기관을 인정해 주고 인정받은 기관이 평가를 주관하고 있다. 교원양성기관평가는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을 평가기관으로 인정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이 사범대학,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직과정 등의 평가를 주관하고 있다. 대학평가는 대학교육협의회 그리고 전문대학평가는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정을 받아 평가를 주관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교사의 질 관리 차원에서 보건복지부도 모든 보육교사 양성교육기관과 과정을 평가할 필요

가 있으며, 우선적으로 보육교사교육원 평가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데, 이 때 평가 주관 기관은 보건복지부가 위탁기관을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사단법인 한국보육교사교육연합회는 금년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보육교사교육원 평가를 자체적으로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상 두 발표자의 논문을 각각 토론하였다. 오늘 두 발표자의 논의와 평소 보육교사교육원을 운영하면서 생각하였던 것을 몇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토론을 끝마칠까 한다.

우선 중장기적으로 보건복지부가 보육교사의 수급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여 보육교사 양성정책을 이끌고 나가야 한다. 교사양성은 개방양성과 목적양성 두 체제가 있다. 애를 들면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교사는 교육대학교를 통하여 목적양성을 하고 있고, 중등교사는 사범대학, 교육대학원, 교직과정 등을 통하여 개방양성을 하고 있다. 목적양성은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대부분 교직에 몸을 담고 취업을 하지만 개방양성의 경우는 장롱속 자격이 넘쳐난다. 토론자가 볼때 우리나라 현행 보육교사 양성은 개방양성이지만 개방양성 가운데서도 목적양성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보육교사교육원이라고 생각한다. 교원수급정책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목적양성이 정책수립에 유리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육교사교육원에 대한 위상 등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보육교사의 양성과정과 자격체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중장기적인 보육교사 양성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김은설님의 연구에서 종합적으로 연구가 되었는데 자격제도부분만 오늘 발표하였는지는 보고서를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항상 보육교사 양성과 자격에서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문제 지적은 3급 보육교사 양성기관인 보육교사교육원에만 집중되고 있는데 이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본다. 토론자가 볼때 보육교사교육원은 보육교사 목적양성교육기관이자 핵심교육기관이다. 김의향님의 논문에서 나타난 통계치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즉 2010년 3월 현재 현직 보육교사(약 150,000명)의 41%가 보육교사교육원 출신이고, 2009년 11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보육교사교육원 수료생(약 9,800명)의 68%가 현직 보육교사로 근무 중이다. 1년 과정에 많은 교과목을 소화해야 하 때문에 부실교육의 우려가 있고, 교양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보육교사양성 전문교육기관인데도 지금은 교육훈련시설, 즉 학원과 같은 교육기관으로 격하되어 있어 25개 과목 66학점을 이수하고도 학력도 학점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로 지적되어야 한다. 유치원이나 초·중등교사 못지않은 전문직인 보육교사를 양성하는데 양성과정이 너무 난립해 있고 잡다하여 공신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리고 다양성이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개방양성으로 누구나 보육교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장롱속 자격을 낚발하게 되는 우려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육교사 양성과정과 자격체계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차제에 보육교사교육원도 수업연한의 문제, 교육과정의 문제, 특히 학력과 학점인정 문제 등이 포함된 교육원 위상이 종합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육 관련된 용어(법적 용어)를 정비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 같다.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법적 용어들 중에서 보육교사교육원을 교육훈련시설로 규정 한

부분, 보육종사자, 보육시설장 등 보육을 유치원이나 초·중등학교와 비교하여 스스로 비하하는 용어들이 너무 많다. 딱히 지금 당장 좋은 용어가 생각 나지는 않지만 좋은 용어를 만들어서 고쳐나가는 노력이 정부차원에서는 물론 보육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야 할 부분이다.

감사합니다.

## 보육교사 및 시설장 자격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諸考

김 용 희 (한보련 국공립분과위원장, 안양신기어린이집원장)

### □ 들어가는 글

이미 보육현장에 몸 담고 있어서인지 자격제도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 가는게 사실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학교(양성기관)에서는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과목이나 직업에 대한 이해, 자질, 태도 등을 가르치면 되고 전문가가 되는 과정은 현장에서 시설장의 역할이나 수퍼비전 체계가 중차대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사이버교육이나 단기양성과정 등을 통해 남발되고 있는 보육교사자격증 제도에 대해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됨을 강하게 토로하고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우려의 소리는 자격증제도가 도입된 초기부터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왜’ 자격제도를 강화하려고 하는지 어깃장을 놓고 싶은 심정도 크다. 1급이든 2·3급이든 간에 해도 해도 끝없는 일에 받는 대우는 같은데 ... 본질적인 것이 해결되면 스스로 ‘격’과 ‘질’을 갖추려는 교사들이 보육현장에 준비할 것임을 확신하는 바이다.

### I. 보육교사 자격제도 개선 방안(김은설 연구위원)에 대한 의견

#### □ 자격증 제도에 대한 기본 생각

- 환경미화원(기능직10급, 초봉230만원 정도) 채용시 고학력자 몰리는 이유
- 장애아(통합)보육시설에 특수교사가 기피하는 이유
  - : 열악한 급여를 제시하는 보육시설에는 열악한 교사만이 근무할 수 있다.
  - :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 단기 양성과정이 계속 존재하는 이유
  - : 보육시설 급여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전반적 급여가 인상되면 그에 걸맞는 교사의 자격과 자질을 갖춘 자를 채용할 것임.
  - : 보육교사의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4쪽)으로 제시한 내용 중 맨 마지막 근무여건이 개선이 되어지면 앞서 제시한 요인들은 동시다발적인 개선이 수반되어질 것임. 2005년 이래로 보육관련 개선 내지 향상 방안이 현장에서는 줄곧 치우개선을 주장하여 왔으나 향상 정책 담당자나 연구자들은 옵션으로 제시하고 있는 수준임.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05년도부터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제도개선이나 획기적인 보육정책 수행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20세기의 언젠가, 무엇을 근거로 작성되었는지 알 수 없는 급여표에 의해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영유아’ 앞에서 회생과 헌신을 강요하여 왔으나 이제는 보육이 전문직으로서 사회적 대우를 받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 □ 전공학과제로의 전환

보육교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3쪽)으로 제시된 내용(영유아발달 특성에 대한 전문지식, 기본 소양과 신념, 태도, 직무능력, 의사소통기술 등)은 유사학문을 통해서라도 취할 수 있기에 ‘학과제’ 주장에 대해 설득력을 약화시킴.

- 영국연수시 사회복지 전공자들은 현장에서 찾아볼 수 없었고 (공무원으로서 전달 체계 역할을 수행) 현장에는 전공 불문한 국가자격증 취득자들만 있었음. (현장에서는 교사간 자격 차이가 없고, 모두 국가자격증 취득자로서 이전 배경에 상관없이 현직에 대한 신념과 전문성을 가지고 일함.)

: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국가자격증 제도를 통해 현장에 진입하게 하는 방안도 전문성 향상을 위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만함.

#### □ 명칭이 왜 보육‘교사’인가?

명칭은 곧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유아교육과 보육의 발생배경이나 학문적 근간, 철학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직무의 유사성으로 인해 교사(교원)가 아님에도 교사이어야 한다는 정체성 혼돈을 겪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움. 우리를 항상 ‘유아교육’에 견주고 우리의 갈 길이나 목표가 유치원 교사나 원장의 갈 길로 오해 또는 착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얼마든지 전문직으로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사회복지사협회’ 등과 같이 자격을 갖추고 현장에서 일하는 자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단체가 있는데 우리는 자격자체가 ‘시설장’과 ‘보육교사’로 나뉘어 있어서 하나로 모일 수 있는 단체를 구성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자격제도와 연관하여 생각해 보게 된다. (직급의 구분과 자격요건은 필요하나 자격증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임.)

#### □ 보육교사 자격 제도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

##### 보육교사 3급

- **현장진입** : 보육교사 3급에 ‘전문성’을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영유아’에게 ‘실습 수준’이나 ‘어설픈’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3급 자격 취득 후에** 보육현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300시간 이상) 이상의 자원봉사나 대체교사 활동 경험을 요구하여 실제 경험을 통한 직무에 대한 이해와 기술습득, 봉사정신 함양 등 예비전문가로서 훈련과정이 필요하다.
- 현장의 일각에서는 보육교사 3급을 ‘보육사’로 구분하고 대체교사로 근무하게 하는 제안도 있음. (간호사, 간호조무사)
- **승급** : 2급으로의 승급 시에도 필요 연수를 **2년으로 연장(+ 승급교육)**하되, 영아반, 유아반 학급운영 경험이 모두 있어야 함.

##### 보육교사 2급

- 보육교사 2급 양성교과목 조정 및 이수학점 상향에 대해 적극 동의하면서 ‘**현장활동’과목 포함할 것**을 제안함.

보육실습을 하기 전(前) 학기에 주1회씩 보육시설 탐방(최소 방문기관수를 제시)을 통해 다양한 보육환경과 프로그램, 교사의 역할과 영유아의 발달특성 등에 대해 이론 이외에 실재를 통해 경험해 봄으로써 학생이지만 현장성을 갖추게 하였으면 함. 이는 학교 방침(?)에 따라 복수자격증 취득을 위해 목적없이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결정적 선택’의 기회도 될 것임.

- 승급 : 1급으로의 승급 시에도 승급교육과 더불어 영아반, 유아반 학급운영 경험이 모두 있어야 하며,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려면 확고한 전문직으로서의 위상을 위해 선임교사제가 아닌 2급에서 1급으로의 승급시에 도입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승급교육(2급→1급)에 대한 평가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것 보다 주기적으로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주최하여 공신력을 높일수 있도록 함)

#### □ 기타 의견

- 보육실습 기준을 ‘고유한 보육시설의 업무와 환경에 익숙할 수 있는’ 보육시설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적극 동의하며 실제 실습생들로부터의 의견청취에서도 드러난 내용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한 실습생들은 근무시간과 업무량에서 유치원 보다 어린이집이 훨씬 많고 육체적으로 힘이 들어 차후 유치원 근무를 희망하고 있었으며, 유아교육 졸업생이나 유치원 근무경험 교사들은 영아반 보다 유아반 담임을 선호하고 있음.
- 보육업무 경력 직종 제한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할 내용임에도 언급되었다는 자체가 이를 이기적으로 해석하고 ‘보육교사’ 또는 ‘시설장’으로서의 진입의 사례가 되었다니 ‘규제’와 ‘제한’사항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듦. 보육시설 종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은 어떠한 직종이든 같아야 할 것이나 ‘보육교사’ 또는 ‘시설장’으로서 요구되는 고유업무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없이 보육시설에서의 근무경력 만으로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이 오늘날 우리 보육직의 현주소임을 자각하며 이는 분명하게 우리가 전문가 집단으로 발돋움 하는데 저해요인이 될 것이므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아직까지도 보육현장에서는 정식 보육교사 또는 시설장으로 근무하였음에도 경력에 따른 호봉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한데 제한하여야 할 것은 제한하고 인정해야 할 것은 인정해야 보육현장의 발전이 도래할 것임.
- 아울러 **중장기 추진 검토사항(16쪽)으로 제시한 내용은 ‘here&now’ 적용하여야 할 사항임.**

#### ‘선임교사제의 신설-국가자격시험의 도입’

대부분의 보육시설에는 ‘주임교사’가 있으며(‘주임’ 보다 ‘선임’의 명칭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였으면 함.) 시설장과 교사간의 역할과 업무를 조정하고 중개하며, 일반 보육교사와는 차별화된 업무수행과 역할로서 원 운영에 기여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장기근속자임) 보육시설에도 중간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임교사 직급제도를 만들어서 확실한 직무와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 ‘선임교사’제도 도입시

- ▶ 1급 교사중 경력 3년 이상된 보육교사 대상
- ▶ 1년에 일정 시간 이상(상·하반기)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보수교육 또는 특별직무교육을 통해 supervisor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운영의 기초교육(재무회계규칙, 보육정책, 보조금 사용에 대한 책무성, 윤리적 운영, 보육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실제 등)을 통해 예비 시설장으로서의 준비교육과 선임교사로서 실제 운영에 기여하도록 함.  
(차후 시설장 자격 취득을 위해 선임교사 기간동안 받은 보수교육, 특별직무교육 등의 ‘수료장’이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연계)
- ▶ 선임교사제가 도입되면 시설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에도 기여가 될 것임.
- ▶ 교사들과 똑같은 보육을 하고 선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므로 오후 시간에 선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체교사 지원이 수반되어야 함.  
(이애주의원 발의안:취약보육시설에 보육도우미과건)

### ‘자격급수에 따른 호봉의 차등 책정’

보육직무와 전혀 연관성 없는 현재의 급여표 전면 개정에 대해 더 이상 현장에 ‘인내심’을 요구해서는 안될 상황임. (20세기에 만들어진 급여표로 21세기 보육정책을 수용하면서 현장을 지켜나가고 있음) 우리 현장은 전면 개정을 원하나 현재의 급여표를 기준으로 자격급수에 따른 호봉 차등 적용, 선임교사등 직책수당 지급, 장기근속수당 지급 등 일 한 것 만큼 ‘수당’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연구자료(유희정의 4인, 2007년)를 기반으로 당장 적용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고령화&저출산’시대의 ‘보육직’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과 위상을 고려한 새로운 보상체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현장의 각성 필요

보육시설의 운영원칙이 엄연히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채용시 겪게 되는 ‘근무시간’에 대한 조정 요청이나 경력자임에도 보육계획안 작성 경험 전무하다고 하는 교사들의 행태는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은 커녕 기본 자질과 태도를 의심케 하고 있다. 무분별한 특별활동 실시나 과목별 운영 등으로 ‘보육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박탈의 책임은 곧 현장에서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전문직으로서 도약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각성하여야 한다.

## II. 보육시설장 자격제도 개선 방안(김의향 국장)에 대한 의견

사실 보육의 질은 보육교사의 능력과 자질에 의해 결정되어지지만, 부모들은 교사들이 1급인지 2,3급인지 알 수 가 없다. 전문성이나 자질이 부족한 교사들을 그대로 부모에게 노출시키거나 그 책임을 보육교사에게 돌릴 시설장이 어디 있겠는가? 자질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교사들로 인해가슴앓이를 하는 시설장의 고충을 현장에서 쉽게 찾을수 있으며 그러기에 교사를 전문가로 키워내야 할 시설장의 보육에 대한 마인드나 철학,

조직관리 능력이나 전문성 등은 매우 중요한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보육체제로서 운영되고 있는 보육시설의 대부분이 자기 재산을 투입한 민간사업자가 대부분인 현실 속에서 시설장으로의 진입시 보조금 사용에 있어서의 책무성이나 투명한 운영, 공보육이 추구하는 바에 ‘공식적’인 합의과정이 필요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유아’의 이익이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직무를 수행하는 ‘윤리적’인 책임도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시설장 자격제도를 개선·강화하여야 함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다.

□ 보육시설장 사전교육 도입에 대한 의견

- 오래전부터 주로 유아교육 원장 자격이 있는 분들이 강력하게 주장하여 왔음.
- **선임교사제를 도입**하면 시설장이 되기까지 선임교사 경력을 요구하여 사전교육에 대한 필요성이나 요구, 비중을 낮출 수 있음. 보육교사 직무(종일제 보육, 방학 없음)의 특성상 단기간의 몰입교육체제 보다 선임교사 과정을 거친다면 예비시설장으로서 현장이 곧 실습장이고 교육장이 될 것임.
  - : **선임교사 경력 2년 이상(연30시간 이상 선임교사 직무교육 실시) + 시설장 사전교육**
  - :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주임교사의 역할을 ‘선임교사’직급으로 신설하여 공식적인 역할제시와 그에 따른 보상체제를 마련하여야 함.
  - : 유치원 원장의 자격연수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현실적인 어려움(결국 재정적 지원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보다 못미치는 교육시간을 제시하는 것은 타당성 부족함.
- 시설장 사전교육에 대한 평가도 해당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것 보다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주최하여 공신력을 높일수 있도록 함
- 참고로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체 평가 기준을 보면 ‘**시설장의 전문성**’ 항목에서 시설 운영경험이 15년 이상, 10년~15년 미만, 5년~10년 미만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있음.
  - ※시설근무 경험이 아니라 시설운영 경험임.

□ 시설장 교육과정에서 ‘시설장의 역할’과 ‘윤리’를 구분하여야 할 것임.

시설장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접근 필요(supervisor),  
‘보조사업자로서 윤리적 운영’에 대해 강조

□ 현직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자가 시설장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참여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동의 하며 아울러 시설장 자격을 취득하고서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지 않다가 현장에 진입하게 될 경우 이 때에도 사전교육에** 준하는 ‘**교육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 보육시설장 자격기준 조정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장 자격기준 조정에서의 개선방안은 현행대로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특수교육이나 장애인복지(재활관련학과 전공) 전공자들의 우선 희망 직장은 보육시

설이 아니며 차선책일 경우가 많다.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자격과 요건은 일반 시설장의 자격과 경력이라고 생각하며, 직무교육 시간이 짧거나 교육과정이 부실하면 그에 대한 개선책 제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일반 보육시설 혹은 장애아통합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아보육에 대한 소신을 가지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설장이 있다면 직무교육을 통한 진입의 경로를 열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Ⅲ. 보육교사교육원 평가에 대한 의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격제도의 개선으로 현장진입과 승급의 요건을 강화한다면, 그리고 보육교사 임금이 오르고 보육이 전문직으로서 자리매김해 간다면 보육교사3급에 대한 수요는 지금과 같지 않을 것이고, 보육교사로서의 접근성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자격제도 개선과 더불어 교육원도 거듭날 수 있도록 ‘변신’에 대한自省과 자구적인 노력으로 앞날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보육교사교육원 평가는 시기적절하다고 생각되며 평가는 국가차원에서 주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보수교육 등 재교육 위탁기관으로 선정하고 교육비 자율화 등의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부여(이대균외,2009) 하되, 등급제 적용(홍은주,2009)안을 혼합하여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화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 결론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은 보육정책적으로 이미 시도하고 있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보육의 선진화 방안으로 오늘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자격제도를 개선하고자 토론회가 개최되었고, 그 다음은 무엇인가?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가들은 애써 열악한 보육현장의 처우에 대해 외면하면서 우수한 보육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영유아’를 외면하지 못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보육환경의 개선을 위해 헌신에 헌신을 다하고 있다. 이제 보육재정이 눈두덩이처럼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직접적인 보육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보육종사자들의 처우를 위해서는 어떠한 개선의 여지도 없었음을 이 자리에서 주지하여야 하며, 항상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너무나 명확한 ‘선진화’ 방안인 급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명실공히 보육직에 대한 사회적 위상을 ‘급여표’로서 답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 참 고 문 헌

- 교육과학기술부 보도자료(2009.12.8).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  
 김은영(2007). 사립유치원 교사와 보육시설 교사의 근로여건 개선방안. 육아정책개발센터 이슈페이퍼 2007-17  
 보건복지부(2010). 보육사업안내  
 유희정,문무경,원명순,김애리,김홍희(2007). 보육시설종사자 경력 및 호봉체계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애주의원 대표발의 2010.5.18)

## 학부모가 보는 보육교사/시설장 자격제도 개선 방안

원 준 호 (예남어린이집 원아부모)

### 1. 보육교사 자격제도 개선 방안

#### 가. 왜 '보육교사'인가?

보육교사라는 명칭이 생긴지 2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교사라는 명칭에 대해 교사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인식이 부족한 부분이 있음. 특히, 교사라는 직업에 어울리는 직업적 책임과 사회적 대우와 인정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동의함.

#### 나. 보육교사 자격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표2>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현황에서 제기되었던 발급 건수와 더불어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 급수의 비율은 어떤지? 각 급수별 근무년수는 몇 년 인지? 등을 표로 작성하여 비교하였다면 보다 각 급수별 비교가 쉬웠을 것으로 봄.
- '주제발표2' 보육교사교육원 평가 부분에서도 제기되었듯이 초점은 보육교사 3급의 전문성에 맞춰져 있는데, 보육교사 3급 폐지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당장 폐지하기 어렵다면 자격요건 강화를 위한 조치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봄.
- 또한, 양성 교육과정 비교<표3> 부분에서도 보육교사의 양성기관이 유치원교사에서는 없는 사이버대학이 인정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사에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과 별개로 실습과 전문과정을 통해 사이버대학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봄. 현실적으로 타 전공에서 사이버과목으로 12과목 35학점만 이수하면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는 유치원교사는 물론 사회복지사에 비해서도 너무 쉽게 자격이 부여되어 진정한 보육교사로서 사회적 책임과 직업적 윤리가 준비되었는지 의심이 감.

#### 다. 조사결과의 분석

'전공학과제로의 전환'과 '교직관련 과목의 추가'가 높은 비율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 낮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다 상세하게 기술하여 왜 현실화가 어려운지를 파악하고 보완책을 마련하여 현실화가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라. 개선방안

- 보육실습 강화를 위해 2학점에서 3학점으로 상향조정하는 부분과 더불어 실질적인 실습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봄. 즉, 실습기관을 평가인증보육시설에 제한함과 동시에 예비교사가 경험하고 습득해야 할 내용으로 '실습 공통 매뉴얼'을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일관된 현장실습이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함.
- 중장기 '선임교사제' 도입에 관하여 아직 시설장에 대한 '국가자격시험'도 마련되지 않은 시점에 '선임교사 국가자격시험'은 더 어려운 현실로 시설장에 대한 '국가자격시험'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봄.

### 2. 보육시설장 자격제도 개선 방안

#### 가. 보육시설장의 역할 및 전문성

아직까지 9시 저녁뉴스에서 어린이집 관련 사건/사고 뉴스가 나올 때 마다 가슴이 철렁하는 입장에서 정말 보육시설장 자격제도가 전문성을 갖춘 보육시설장을 배출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의심하게 만들고 있음.

#### 나. 현행 보육시설장 자격제도의 문제점

- 2006년 12월 30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교부된 전체 보육시설장 자격증은 116,813건으로 실제 보육시설장 자격증 취득자는 112,471명이며, 이 중 보육교사 자격증과 보육시설장 자격증을 모두 취득한 자는 100,024명으로 보육시설장 자격증 취득자의 86%를 차지함, 즉 전체 보육시설장 자격 취득자중 14%인 16,789명이 보육교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10곳 중 1.4곳으로 시설장의 현장경험 부족을 나타낸다고 봄.
- 또한, 2009년 12월 31일 현재 현직에 종사하는 보육시설장이 35,404명이라면 자격증 소지자중 31%만이 현직에 종사하고 있다는 수치인데, 나머지 69%인 77,067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봄.
- 그리고 자격 취득을 위한 사전교육의 부재, 다양한 자격취득경로로 인한 전문성 저하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봄.

#### 다. 보육시설장 자격제도 개선방안

- 보육시설장 사전교육에서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여 80시간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유치원 원장의 자격연수 시간과 비교해도 1/4 수준도 안되는 시간으로 더 보강해야할 필요가 있음.

#### 라. 보육시설장 자격 기준 조정

- 가정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 상향조정에 대해서 적극 찬성하며, 사전교육에 대한 시간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봄.
- 일반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 상향조정에서 보육업무 경력이 없는 타 자격소지자에 대한 경로를 제한하여, 보육시설장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잘 제시되

었다고 봄. 그러나 유치원 원장 자격 소지자에 대해 현행 방법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보육현장에 대한 경험 등 적극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봄.

### 3. 보육교사교육원 평가

#### 가. 보육교사교육원 현황

2010년 3월 31일 기준 현직 보육교사 149,934명 중 41%가 보육교사교육원 수료자이고, 현직 근무 중인 보육교사 중 67%는 고등학교, 31%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으로 대학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98%가 보육관련 학과가 아닌 기타학과 전공자로 이는 보육교사에 대한 진정한 직업의식보다는 취업이 쉬운 직종으로 인식되어 보육교사교육원에서 양성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듦.

#### 나. 보육교사교육원 평가사업 시행

보육교사교육원 평가관련 선행 연구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다양한 연구과제를 바탕으로 민간차원이 아닌 국가에서 담당하여 질 높은 평가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함.

### 4. 맺음말

아이 2명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키워온 학부모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보육교사 및 시설장에 대한 자질은 피부로 느낄 만큼 가깝고 예민하다고 본다. 이는 학부모들이 몰라서 눈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아이를 맡기는 입장이라 웬만하면 이해하고 넘어가려 한다. 하지만 밖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없다고 해서 위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장기적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로 보육시설 개선보다는 보육교사 자질에 대한 보완이 마련되어야 하고, 둘째, 보육시설장에 대한 관리 감독 및 보수 교육이 체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셋째, 교사, 시설장 자질만 제기하기보다 처우개선도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이 혜 수 (인왕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어느 때 부터인가 이 문구를 접하면서 과연 ‘내가 보육교사로서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자격을 놓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문구는 현실적으로 우리네 보육교사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평가인증이나 서울시의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을 준비하면서 보육교사들은 각종 서류업무로 시달리는 등 낮은 임금에도 불구하고 하루 평균 10시간가량의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과정에 대한 교사자율장학과 안심모니터링, IPTV 설치 등 끊임없이 평가와 감시로 보육교사는 더욱 더 힘든 보육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물론 질적인 보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방안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는 수많은 보육교사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보육환경의 질적인 향상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식자재 검수 등으로 인해 영유아의 급간식의 개선과 위생과 청결, 안전 등 많은 영역이 두드러지게 개선되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보육교사 역시 무자격 교사 및 자격증 대여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 시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보육’이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쉽게 생각할 수 없게끔, 자격증 제도며 보육시설 인증 등을 통해 철저히 보완 및 관리할 수 있게 되었음은 지금껏 발전되어온 영유아 보육정책의 쾌거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육현장은 여전히 보육교사의 질적인 수준만 놓고 각종 교사연수며 교수장학 등 설 새 없이 교사들을 가만히 놓지 않고 있습니다. 교사의 전문적인 수준향상만을 고려한 채 영유아와 오랜 시간 생활로 신체적·심리적·정서적인 안정을 취할 수 없는, 지칠 대로 지친 교사를 놓고 지속적으로 보육향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 향상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보육현장에서 제대로 영유아 연령에 맞는 보육이 전문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영아전담보육시설이나 영아반 학급담당 교사가 유아교육과 출신으로 유치원정교사2급 자격과 보육교사1급 자격을 갖고 있지만 학과이수과목 중 어느 곳에도 영아보육에 관련된 과목은 없었습니다. 또한 오랜 경력으로 인해 호봉이 높아지고 보육시설 운영상 80%의 인건비 지원을 영아반만 받는 상황에서 이는 교사의 전공과 무관하게 오로지 호봉으로 영아반을 맡게 될 수밖에 없게 현실입니다.

보육시설은 유치원과 다르게 만0세부터 취학 전 만5세까지 다양하게 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령별, 수준별, 맞춤형 보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보육교사의 전문적인 육성과 자격제도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보육현장에 오면 가장 먼저 신입교사(초임교사)교육, 경력교사교육, 주임교사교육 등 다양한 경력과 직임에 관련된 교사교육을 통하여 전반적인 보육시설운영에 도움이 되는 효율적인 교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보육교사로서의 인성과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보육교사론」을 필수기초교과목으로 포함함에 있어 그 필요성이 매우 큼니다.

또한, 국가수준의 보육과정으로 보육시설에서 운영해야 할 보편적 보육내용을 제시한 표준보육과정은 총 6개의 영역으로 연령집단별 보육내용을 각각의 수준으로 나누어서 구분되어 있어서 좀 더 전문적이며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구체적이고 발달에 맞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에 「영유아발달」 과목을 「영아발달」과 「유아발달」로 구분함에 있어 현장에서는 더욱 더 그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유아교육학과 전공자로서 영아와 유아를 “아동”으로 묶음으로 인해 영아발달의 이해와 정보에 많은 부족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는 현장에서 직무교육이나 교사연수를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교육’ 영역을 강화함에 있어 기존의 과목을 세분화하고 기존 3과목 선택에서 6과목으로 확장함으로 보육현장에서는 연령별, 수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교수방법에 대해서도 연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보육실습 기준을 변경하고 선임교사제를 도입하여, 오랜 경력과 실력을 갖추고 있는 보육교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호봉과 낮은 수준의 교사복지로 인해 자의로든 타의로든 보육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교사들의 자리를 지켜주는 것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제도의 개선방안을 준비하면서 사회복지사 2급이며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갖고 있는 교사들이 있어 이수과목을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사회복지사 2급을 비교하면 필수이수과목이 총 10과목(복지시설 현장 실습 120시간 포함)으로 선택과목 4과목을 포함, 보육교사 2급 과목의 중복과목인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아동복지(론), 정신건강(론)을 제외하여 총 22과목을 이수하면 동시에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이 나오게 됩니다. 이는 사회복지의 하위 개념 중에 아동복지가 포함된다는 뜻으로 보육실습 160시간과 복지시설 실습 120시간이라는 현장 실습을 감안하고 볼 때 복수전공이라해서 보육관련 7과목만 추가 이수하면 보육교사 2급의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보육교사 자격증은 보육교사교육원, 2·3년제 대학, 4년제 대학, 사이버, 방송통신대학, 대학원을 비롯하여 타학과에서도 어느 정도 보육관련 과목을 이수하면 자격 취득이 용이하며 더욱이 타학과외의 경우, 같은 대학에 보육과 관련된 학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수가 가능함을 고려할 때 이는 난무하는 보육교사 자격증의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끝으로 보육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 생각하면서 보다 높은 보육의 질과 보육교사로서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아직도 개선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교사복지를 마지막으로 거론하고 싶습니다.

보육시설의 색깔은 보육의 질도 아니요 보육교사의 질도 아닌 보육시설장의 교육적인 철학과 소신, 그리고 열정입니다. 시설장 역시 많은 업무와 지역사회 연계활동으로 인해 전과 다르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점차 연령이 높아지는 시설장들은 다루기 어려운 PC의 세계를 헤매고 있으며 이는 곧 젊은 교사들의 업무 분담으로 맡기게 되며 이에 실질적인 보육과 관련한 업무보다는 시설운영에 관련된 서류적인 업무에 밀리게 되고 맙니다. 이로써 보육교사의 질적 향상을 놓고 교사는 시간과 체력을 보육이 아닌 다른 잡무에 소진하게 되며 이 또한 보육의 질을 놓치고 마는 수레바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보육교사의 복지를 개선함에 있어 시설운영 전반에 세분화되고 체계적인 보육인력 보충이 절실히 필요함을 요구합니다. 사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청소와 시설정비에 관련된 전반적인 담당 직원 등을 고용하여 보육교사가 전적으로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육환경 및 교사 복지가 개선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추후에 교사의 근무 환경 개선 및 복지를 놓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